

#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김필두 · 한부영

KRILA

연구진

김 필 두 (연구위원)  
한 부 영 (선임연구위원)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발행일 : 2018년 1월 31일

발행인 : 이 호

발행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 Tel. 033-769-9999

판매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인쇄처 :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SBN : 978-89-7865-432-6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복지기능의 확대 및 복지비 지출의 증가는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 및 복지비 분담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령상 노인복지사무의 중앙-지방 간 재배분 기준을 모색하고,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사무를 재배분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 목적별 사무분류 체계에 의하면,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이 일방적이거나 분류가 모호한 사무가 많았다. 분석결과, 법률 목적을 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한 경우보다 행위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한 경우, 미분류 사무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행정행위를 새로운 기준으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관계를 설정하고, 정부 간 관계로부터 각각의 역할을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기결정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지방이 자기결정권을 자기책임의 범위 안에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법과 제도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이나 제도가 정하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2018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요약

KRILA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18년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야 하는 만큼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법령상 노인복지사무의 중앙-지방 간 재배분 기준을 모색하고,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사무를 재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령상 사무를 분석하였다. 먼저, 법령상 사무 중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법률의 범위를 확장하여 44개 법률 1,424개 사무에 대해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중앙의 사무로 총48개 사무가 분류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12개의 사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424개의 사무가 분류되었다. 또, 사무분류가 모호한 사무는 629개로 분류되었다. 그 외의 331개 사무는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서 일방적이거나, 분류가 모호한 사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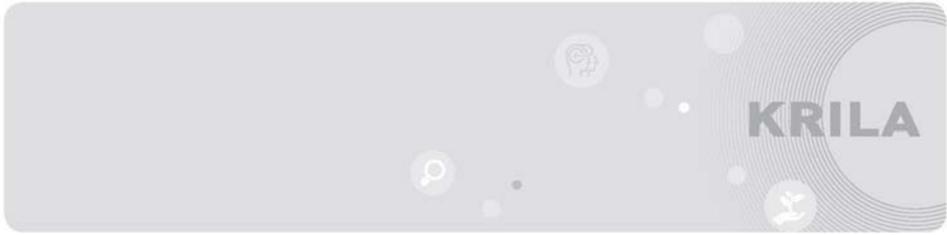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10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사무 중 표본을 추출하여 행위기준의 사무분류와 법률목적 기준의 사무분류를 통해 분류의 모호성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상 노인복지사무의 일부를 추출하여 법률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무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무를 구분하여 미분류 사무의 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법률 목적을 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한 경우보다 행

위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한 경우, 미분류 사무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행정행위를 새로운 기준으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관계를 설정하고, 정부 간 관계로부터 각각의 역할을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근원적인 목적이 주민복리의 증진이고, 지방분권의 효율성은 주민과의 근접행정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바, 주민 가까이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부의 행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하고, 전국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배분을 위해, 사무배분의 기준은 법률의 목적이 아니라,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하는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노인복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의 범위, 대상, 방법, 향후의 바람직한 노인복지 상태를 제시하고, 노인복지의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로서 세부사무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인복지 등 법령체계는 중앙부처의 시행령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한계를 규정하는 비민주적인 법률체계이므로, 시행령의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무는 결국 국가의 위임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기본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기본법 체계 하에 지방자치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복지 법률체계 역시 노인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복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인복지 기본



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적 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은 개별법령으로 규율하는 체계이다. 또한, 개별법령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입법을 지양하고, 현재의 행정입법사항은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기결정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능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혹은 지역주민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에는 반드시 자기책임이 따른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결정에 따르는 자기책임과 자기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결정권을 통한 자치권이 확대되었다는 측면 보다는 행정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부담의 증가가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단체, NPO, 기업 등을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로 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원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역동적으로 협동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국가의 역할과 정부 간 관계	13
1. 국가의 역할	13
2. 정부 간 관계	14
3.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	17
제2절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 역할분담	19
1. 노인복지의 개념	19
2.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21
3. 선행연구의 검토	22



<b>제3장 기능배분의 현황 분석</b>	25
제1절 분석의 틀	27
제2절 기능배분의 현황분석	29
1. 법령상 사무배분 규정	29
2. 법률 목적별 현황	31
3. 법령상 중앙의 노인복지 사무배분 실태	34
4.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의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사무배분 현황	37
5.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사무집행유형	41
제3절 기능배분의 문제점	45
1. 기능배분의 기준과 원칙의 문제점	45
2. 기능배분 실태의 문제점	46
<b>제4장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배분의 실증분석</b>	49
제1절 분석의 개요	51
1. 조사 목적	51
2. 조사 설계	52
3. 분석 방법	53
제2절 분석 결과	54
1. 사무의 성격	54
2. 민간위탁 가능사무	65
3.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68
4.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모호성 비교	77



---

---

제5장 결론	83
제1절 연구의 요약	85
1. 법률목적 중심에서 행위 중심의 기능분류체계	87
2. 노인복지 사무의 중앙-지방 재배분	88
제2절 정책건의	94
참고문헌	99
부    록	101
Abstract	226



# 표 목차

〈표 3-1〉 법률목적 기준 노인복지사무 근거 법률	33
〈표 3-2〉 노인복지관련 사무의 담당주체별 분류(예시) : 부록 참고	35
〈표 3-3〉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적용한 법령상 지방사무 분포	38
〈표 3-4〉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적용한 법령상 지방사무 분류(예시)	39
〈표 3-5〉 행정행위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무 분포	43
〈표 3-6〉 행정행위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시) : 부록 참고	44
〈표 4-1〉 노인복지사무 중 기획사무 분류	55
〈표 4-2〉 노인복지사무 중 집행사무 분류	61
〈표 4-3〉 노인복지사무 중 민간위탁 가능사무 분류	65
〈표 4-4〉 노인복지사무 중 국가사무 분류	70
〈표 4-5〉 노인복지사무 중 광역자치단체 사무 분류	73
〈표 4-6〉 노인복지사무 중 기초자치단체 사무 분류(예시) : 부록 참고	75
〈표 4-7〉 노인복지사무 중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이 모호한 사무(예시)	78
〈표 4-8〉 노인복지사무 중 중앙-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이 모호한 사무	81
〈표 5-1〉 노인복지사무 중 중앙(국가)사무 분류	89
〈표 5-2〉 노인복지사무 중 지방(기초)사무 분류(예시) : 부록참고	92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9
〈그림 3-1〉 분석의 틀	28
〈그림 3-2〉 노인복지관련 사무의 주체별 분포	34
〈그림 3-3〉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38
〈그림 3-4〉 노인복지 사무집행 유형	42
〈그림 4-1〉 노인복지사무의 성격별 분류	54
〈그림 4-2〉 노인복지사무의 중앙-지방 간 배분	69
〈그림 4-3〉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성격 분류	74
〈그림 4-4〉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모호성 비교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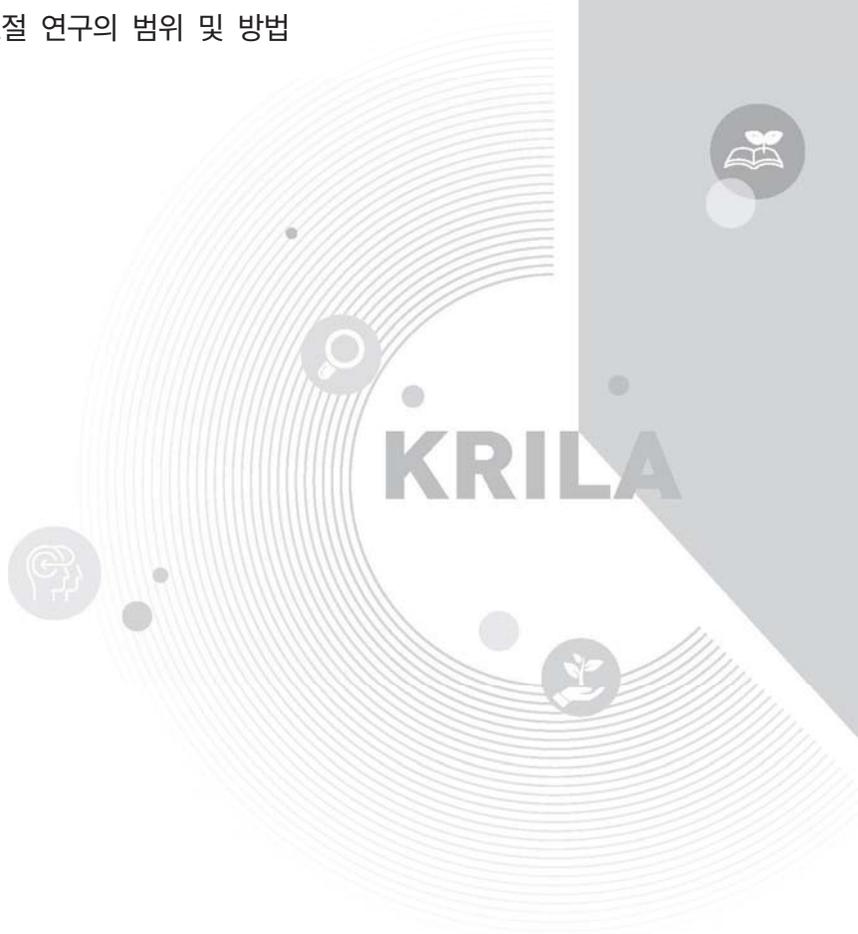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목적

한 국가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것이라고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1980년대까지의 인구 정책은 인구 억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출산장려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였다. 다만, 정책목표의 전환 이후에도 뚜렷한 출산률 증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급속하게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1999년 6.8%, 2000년 7.1%, 2016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6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18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야 하는 만큼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늘어 '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10년에는 6.6명, '30년에는 2.6명, '50년에는 1.4명, '60년에는 1.2명으로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현재 전체국민의 2.4%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 이의 2배가 넘는 5.8%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고, 전체 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근래에는 노인이 가정 내에서도 보조적, 주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향후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기능 확대와 복지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연평균 증가율 13.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중앙정부 8.7%) 고령사회에는 노인복지기능의 확대와 복지비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3.8%이고, 복지예산중 노인복지예산의 증가율은 3.8%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구의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향후에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복지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의 문제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가정의 역할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제반수단을 강구하지만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에 대한 여건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도록 지원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 역할도 확

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과 실버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셋째, 재가봉사사업의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산업화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노인보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노인을 주간이나 단기로 보호할 수 있는 재가봉사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이 계속 생활해 오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동안 하드웨어(Hardware)로서 시설증설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각종 복지시설과 이용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노인복지기능의 확대 및 복지비 지출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 및 복지비 부담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의 수준이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되고 있다. 국정의 중요한 목표인 지방분권에 따라서 중앙의 기능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고 있으나, 이양기능의 80% 이상이 집행적 성격의 사무라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방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있다. 또한, 중앙이 재원을 독점하고 있어서 지방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다른 기능들이 소외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앙-지방 간 적정한 노인복지기능 부담방안을 모색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현행 법령상 노인복지 사무배분의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법령상 노인복지 사무의 성격과 적정 배분에 관한 전문

가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현행의 법령상 노인복지 사무를 재배분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수혜대상 별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구를 추진하는 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설정 하되,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7년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핵심정책과제인 ‘강력한 지방분권 기초확립과 실천’을 위한 노인복지관련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사무배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는 노인복지관련 사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sup>1)</sup>와 여성가족부<sup>2)</sup>를 비롯하여, 국가보훈처<sup>3)</sup>, 국토교통부<sup>4)</sup>, 기획재정부<sup>5)</sup>,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sup>6)</sup>, 문화체육관광부<sup>7)</sup>, 법무부<sup>8)</sup>, 소방방재청<sup>9)</sup>, 중소벤처기업부<sup>10)</sup>, 행정안전부<sup>11)</sup>, 환경부<sup>12)</sup> 등의

- 1) 건강검진기본법, 고령친화사업진흥법,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영양관리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등 20개 법률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등 3개 법률
-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7)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 2개 법률
-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탁법,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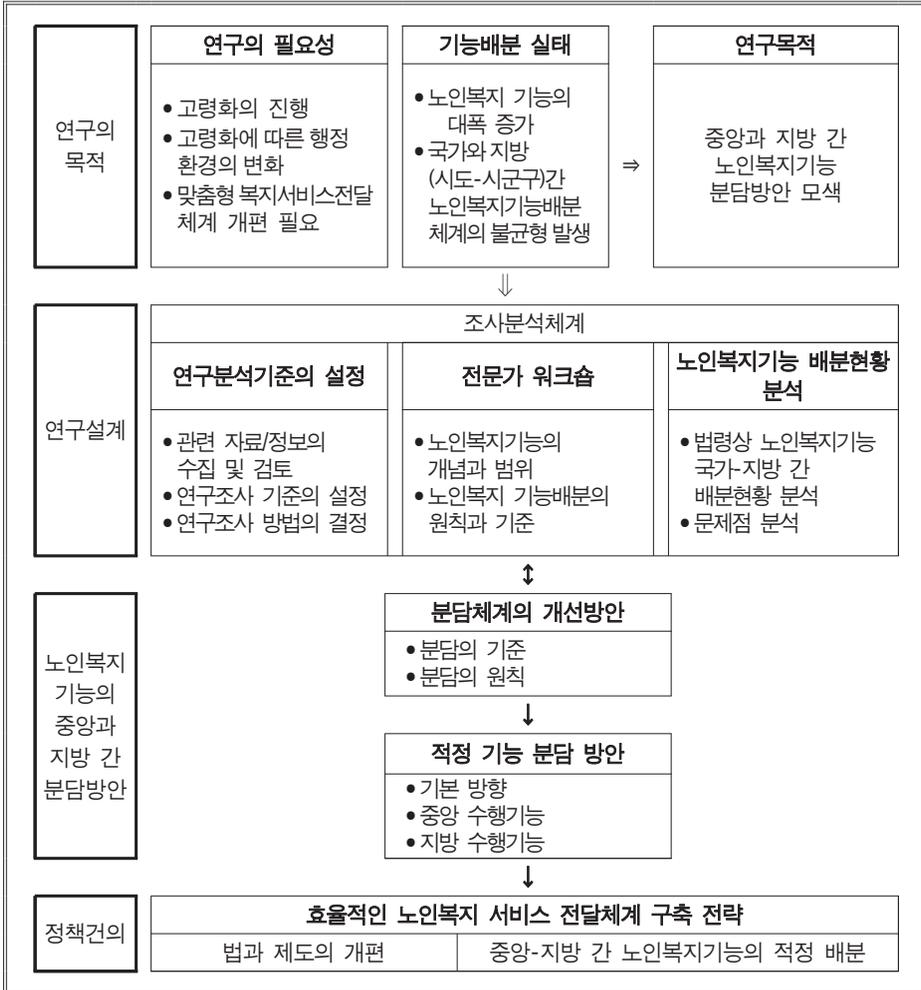
소관, 총 44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복지관련 사무를 추출한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 노인복지기능의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모색하겠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복지 기능의 중앙-지방 간 적절한 분담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법령검토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국내외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 등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 관련 이론과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노인복지 관련 정부의 정책 자료와 관련 법제도, 보고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침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련 조례, 시책 등을 분석한다. 셋째, 교수와 학자 등 노인복지 전문가, 노인복지정책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FGI(포커스그룹 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노인복지기능의 중앙과 지방 간 재배분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다.

- 
-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법률
  -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 12) 환경보건법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제2장

## 이론적 배경

제1절 국가의 역할과 정부 간 관계

제2절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 역할분담







### 제1절 국가의 역할과 정부 간 관계

#### 1. 국가의 역할

오늘날 시민의식의 확대와 복잡성의 증가 등 사회의 변화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복잡하게 분화되는 사회적 현실에서 과연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모든 학문의 화두가 되고 있다 (Franzius, 2003: 504).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sup>13)</sup>는 본원적 국가과제, 공법적 과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국가의 역할은 국가에 대해 기본원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개별적인 법률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국가기관들이 수행하는 수많은 개별적인 활동들을 포함한 국가의 기능과 책임을 모두 의미한다.

국가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국가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March & Simon, 1958)의 한계를 갖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완전한 것(the only one)이 아니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한다. 국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또 완성된 형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

---

13) BVerfGE 73, 280 (294) & BVerfGE 106, 64 (77)

며, 필요에 따라 그 역할을 변화시키면서 존재한다(송석윤, 1998: 15).

국가는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로 국방·외교·통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외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역할이 사회마다 다양하게 정의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정의에 관한 시각이 변화하였으며, 사회정의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에 따라 정당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정의가 변화하였다. 최근의 논의되는 국가의 역할은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에서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정부 간 관계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의 사용기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1930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세욱, 2000: 21). 미국의 경제 공황 이후, 연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어왔다. 미국에서의 정부 간 관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상호관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의는 초기의 연방주의(FED Federalism)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었고, 연방주의는 정부 간 관계론을 개념으로 재정비 되었다. 최근에는 모든 범위 및 수준의 정부 간 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종합적인 용어와 범위로도 이해되고 있다(김미현·최덕현·정명은, 2014: 539).

미국의 연방주의에서의 정부 간 관계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간 관계는 연방주의에서의 횡적인 관계보다는 종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Dunleavy는 정부 간 관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지방행정협의기구, 전문가 조직, 정당, 준정부조직 및 노조 등을 포함하는 여타 조직들의 상호교차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정부 간 관계는 정부가 하는 활동이

나 정부 간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정부 간 관계에 관한 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규정과 제도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지방 간의 관계와 분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전 등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김천영, 2000). 최근의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국내 논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법·제도의 개편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즉,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지방분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간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법·제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통치 권력이 재배분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과 자원배분의 문제이며,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배분에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대적인 비중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을 정의함으로써,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상대적인 비중에 따라 분권화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이란 중앙과 지방의 정부 간 관계에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상대적인 비중으로 개념화 한 것으로, 중앙의 통제권보다는 지방의 자치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지방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헌 이후,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의 범위를 밝히고 있다. 다만, ‘법령의 범

위 안에서'라고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현행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8조 제2항)고 규정하여 중앙정부가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직적 정부 간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 성격을 갖는 「지방자치법」은 국가의 지도·감독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부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한정짓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또, 제167조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관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규정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권한배분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에 방점을 두어 지방분권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현재와 같은 권력적인 감독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간 관계에서 지금까지의 지방분권은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사무에 대한 사무이양기준 제시를 통해 지방분권이 추진되어, 세밀한 사무이양기준의 마련이 강조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기결정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자기결정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내리는 결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자기결정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고, 자신의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성과 실현성, 발전성 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전통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이론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 3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Miserandino, 2013 ; 278).

자율성은 개인들이 외부로부터 압박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행동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유능성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유능함을 타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관계성은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나 집단 내에서의 존재감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능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혹은 지역주민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에는 반드시 자기책임이 따른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결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재정적 부담,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

법상 과실책임주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실책임주의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생활권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러한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 보상 혹은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나 피해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정하는 논리로서 자기결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자기부담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사안이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도 한정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결정에 따르는 자기책임과 자기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결정권을 통해 자치권이 확대되었다는 측면 보다는 행정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부담의 증가가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방정부는 지방의 현실을 주민이 인식하도록 ‘정보공개’와 ‘설명’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행정서비스 제공의 한계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따른 선택과 책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단체, NPO, 기업 등을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로 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원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역동적으로 협동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分權型社會に対応する地方行政組織運営の刷新に関する研究會,2005:1-3).

이상과 같이 지방이 자기결정권을 자기책임의 범위 안에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제2절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 역할분담

### 1. 노인복지의 개념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4조 제5항)고 규정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인에 대한 개념정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국가는 노인에 대한 기본원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활동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의미한다<sup>14)</sup>.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 근로능력이 약화되어 자립적 생활이 곤란해 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자”를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또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UN은 연금수급연령 등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면서 국제간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 Eurostat(EU의 통계국)도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2002년 노년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고,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부양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규정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법령상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이며,

14) ‘노인’이라는 용어가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봉사단체 등의 시책이나 사업 등에서는 ‘실버’, ‘시니어’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고용에 관한 고령자 기준은 50세 이상부터 세분화되었다.

노인복지란 일반적으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빈곤·노화·질병·사망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갖는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적 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가 단절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노인복지는 정부가 개입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UN(1991)은 ‘노인을 위한 UN원칙’을 채택하여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노인관련 사업의 운영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UN이 제시한 원칙으로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 등의 원칙이다. 첫째, 독립(independence)의 원칙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한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은 노인들이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와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돌봄(care)의 원칙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 유지 및 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원칙으로 노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의미한다. 다섯째, 존엄성(dignity)의 원칙으로 노인들이 존엄과 안전 속에서 생활하고, 착취나 육체적·정신적 학대가 없으며, 나이·성별·인종 등의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간 관계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UN이 제시한 원칙은 대부분,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구체적인 행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노인복지는 자연적인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활동능력의 감소에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없을 때,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소극적으로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실현할 것으로 구분한다. 먼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금지는 국가와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천부인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존중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보호의 실현은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구조의무에 해당한다. 즉, 국가의 의무로서 인간으로서의 국민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그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국가가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국가의 목표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제34조 제2항)가 있으며, 여성(제34조 제3항), 노인과 청소년(제34조 제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제34조 제5항)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하여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또, 동법 제2항은 헌법은 국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헌법」에서 규정한 가치에 대한 국가의 보장수준에 대한 기준은 개별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노인복지의 수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노인복지법」(1981년 제정)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의 정책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가족에 의한 노인의 생계보장과 건강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

에 대해서는 연금·사회보험 등으로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에 의한 부양과 연금·사회보험에 의한 지원이 실패한 경우, 정부가 이들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노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2조는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보험법」등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 법률들은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 결과에서 발생하는 빈곤문제에 관한 사회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및 소득 불충분에 의해 발생하는 한계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헌법」의 노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은 구체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헌법은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UN이 제시한 노인복지 정책의 대부분의 원칙에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은 헌법의 목적을 구체화하여 국가의 역할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공공부문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선행연구의 검토

최근에 주요 학술연구지에 발표된 사회복지관련 기능의 분담에 관한 논문들을 살펴 보았다. 최항순(2010)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와 시·군·구간 사회복지기능의 배분 관계를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주로 관련 문헌 및 법규 등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분석하였다(최항순, 2010 : 177). 이재원(2012)은 정부는 중앙차원에서의 복지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과 재정과정에 실질적인 참여 자체가 배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복지재원 분담 현실에 대한 불만 제기와 추가적인 복지사업 거부 등의 정책 저항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저자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재원 배분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복지재원 배분 구조의 재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이재원, 2012 : 44). 고제이(2013)는 최근 보건·복지재정 지출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용분담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해묵은 대립과 갈등이 이제는 사회보장을 불모로 하는 예산 게임의 양상으로까지 치달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과 관련한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저자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이 사회보장 책임구조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서 최적의 사무권한 배분과 재정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규범적 원리와 구체화된 배분기준을 제시하였다(고제이, 2013 : 52). 손희준(2013)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간 기 싸움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고보조사업이 중앙과 지방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저자는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담과 관련하여 경제학 및 행정학적 이론 및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보다 적절한 분담비율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으며, 특히 사회복지 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파급효과 및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가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과 시각을 분석하여 갈등요인을 도출하고, 보다 성숙한 정부 간 거버넌스 체계 형성을 위한 협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손희준, 2013 : 7-8). 중앙행정권한 중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보다 이바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박광덕(2014)은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주로 기능배분 및 권한이양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분석대상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한정하였다(박광덕, 2014 : 249). 이미애(2014)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지역의 문제를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의 결정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정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파악하였다. 여기에 따라서 저자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배분의 관계가 지역경제 활동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저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에 따른 세원 및 재원배분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이미애, 2014 : 385-386). 현외성(2014)은 지방시대, 지방분권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집행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노인복지정책과 법제가 노인복지 수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한계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관련법과 정책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현외성, 2014 : 281).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행정권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권력의 향방이 즉각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졌으며, 과도한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와 그에 기초한 권력 남용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어 권력분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진욱·서준상(2016)은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정치적 혹은 행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주로 분석하였다(신진욱·서준상, 2016 : 61).

이상의 논문들은 사회복지 관련 기능의 배분 기준을 지방분권의 관점이나 권한이 양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기능이 아닌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배분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기능을 법령상 단위사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법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제3장

## 기능배분의 현황분석

제1절 분석의 틀

제2절 기능배분의 현황 분석

제3절 기능배분의 문제점



KR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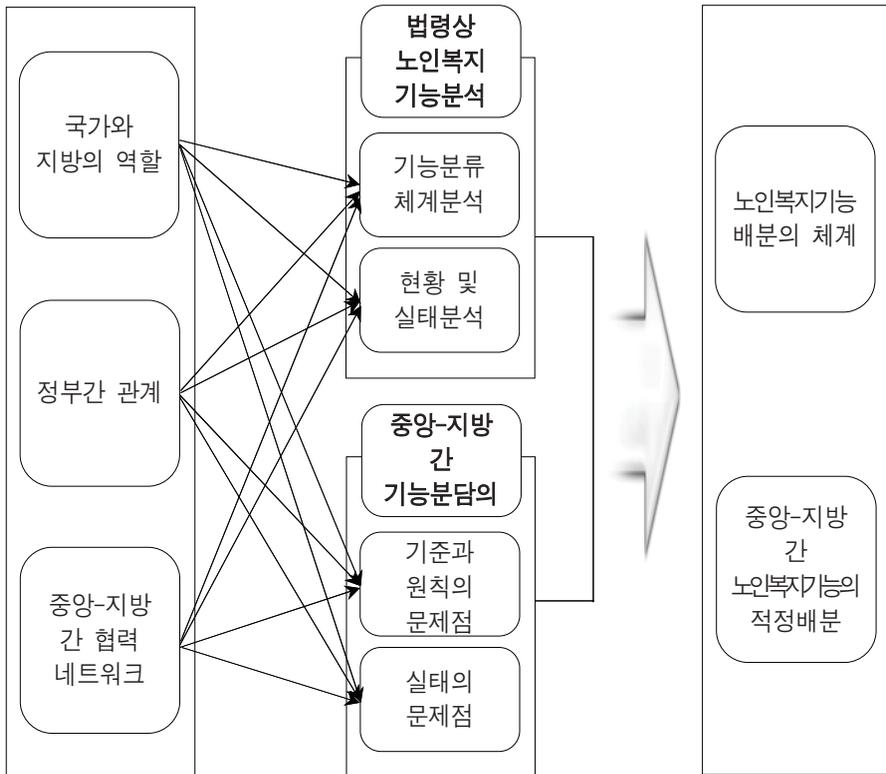
### 제1절 분석의 틀

1단계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하여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 각각의 역할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입장에서 국민 행복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하여 노인복지기능의 분류체계와 분류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법체계 안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인복지 배분체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노인복지 배분체계에 적합한 중앙과 지방 간 노인복지기능의 적정한 배분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3-1〉 분석의 틀



## 제2절 기능배분의 현황분석

### 1. 법령상 사무배분 규정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규정은 법제적 규정과 예시적 규정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먼저 법제적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분류 및 단위사무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둘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셋째,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넷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다섯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여섯째, 지역민방위 및 지역소방에 관한 사무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노인복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는 모두 12종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

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 중 노인복지와 관련한 기능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등 8개 사무이다.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중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2개 사무는 시도에서 수행하고,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등 4개 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4개 사무는 시도에서 수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4개 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한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무 중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 신청 심사 등 7개 사무는 시도에서 수행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등 9개 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한다.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 중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등 27개 사무는 시도에서 수행하고,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등 33개 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사무 중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5개 사무는 시도에서 수행하고,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등 6개 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무 중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등 5개 사무는 시도에서 수행하고,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등 3개 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 중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등 5개 사무는 시도에서 수행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 등 6개 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사무 중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등 6개 사무는 시도에서 수행하고,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 등 8개 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2. 법률 목적별 현황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앙-지방 간 적정한 노인복지기능 분담 방안을 모색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의 법률을 분석하여 노인복지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대상 법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소관<sup>15)</sup>하는 현행의 1,394개 전체법률을 대상으로 법률의 목적 분석을 수행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소관 하는 주민의 복지사무에 관한 법률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소방방재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3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일정 연령 이상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기관에서는 대상자를 특정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한 노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부처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노인복지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정 짓고 있으며, 통일부는 6.25 전쟁관련 납북 등 피해자와 이산가족 등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국방부는 퇴역군인 또는 군무원을 주요 노인복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하여 독립운동 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연령에 따른 기준만을 적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소관 법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법률목적과 법령상 사무배분실태를 분석하였다. 보건복

15)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중 행정부가 소관하지 아니하는 법률은 제외하되, 행정부 외 헌법기관과 행정부가 동시에 소관 하는 법률을 포함하였다.

지부 소관의 20개 법률 중 16개 법률과 여성가족부 소관 2법률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기본권 보장을 구체화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상 사무에 노인은 특정하지 않더라도 노인복지 대상법률로 분류하였다. 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률에서 정책대상을 노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양의 개념에 노인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 경우, 분석에서 ‘사회서비스’로 기술된 법률조항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로 해석하고, ‘부양(가족)’은 ‘노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노인복지사무이더라도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여 노인복지 대상법률에서 제외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을 설립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법률로, 노인복지를 포함하나, 법률의 내용상 공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노인복지 사무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노인 중 일부분만 특정대상으로 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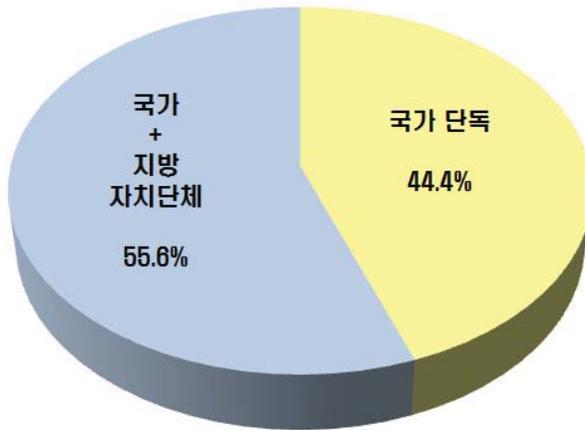
〈표 3-1〉 법률목적 기준 노인복지사무 근거 법률

ID	소관부처	소관부서	대상법령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관리법
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노후준비 지원법
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기본법
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복지법
7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8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건강검진기본법
9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 기반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 지원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법
14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구강보건법
1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7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8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 3. 법령상 중앙의 노인복지 사무배분 실태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는 현행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령에서 추출한 법령상 사무와 여성가족부 소관 2개 법령에서 추출한 법령상 사무이다. 이들 18개 법령의 조문을 분석하여 178개의 단위사무를 추출하였다. 단위사무는 “○○○는 국가의 의무이다”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무가 아닌 선언적 규정, 용어나 절차, 자격요건 등의 해설 등은 단위사무에서 제외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열거한 사무 중 79개가 중앙부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무이고, 나머지 99개 사무는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수행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 3-2〉 노인복지관련 사무의 주체별 분포



〈표 3-2〉 노인복지관련 사무의 담당주체별 분류(예시) : 부록 참고

연번	법률명	조항	사무명	분류	
				국가 단독 (79)	국가+지방 자치단체 (99)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7조	인구정책 수립·시행		○
		8조	자녀의 출산·보육 정책 수립·시행		○
		9조	모자보건 증진 정책 수립·시행		○
2	치매관리법	5조	치매극복의 날 시행		○
		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정신질환 실태조사	○	
		12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4	노후준비 지원법	5조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11조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적정성 등 평가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2조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	
5	사회보장기본법	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
		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2조	사회보장 재정추계	○	
		3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19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6	노인복지법	5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	
		6조의2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 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	○	
		8조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자 지원		○
		23조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		○

연번	법률명	조항	사무명	분류	
				국가 단독 (79)	국가+지방 자치단체 (99)
7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	○	
		7조	장기요양보험사업 시행	○	
		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8	건강검진기본법	8조	국가검진위원회 설치	○	
		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	
		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
		7조	수급자격의 조사		○
		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
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
		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	
		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	

## 4.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의 적용

###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사무배분 현황

사무배분 실태조사 대상 18개 법령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사무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무분석을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추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사무를 분류하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은 법령상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예시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현실적인 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예시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우선 분류하였다. 분류코드 0에서 9까지 모든 법령상 사무를 10종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코드 0번은 법률상 사무가 사무예시에서 제시된 사무 중 2개 이상에 걸쳐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 또 코드 9번은 법률상 사무가 사무예시에서 제시된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에 해당한다. 코드 1번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코드 2번은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코드 3번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코드 4번은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코드 5번은 국민건강증진사업, 코드 6번은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코드 7번은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코드 8번은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등이다.

분석결과, 총18개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서 모두 266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사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드 9(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로 구분할 수 없는 사무)는 총 80개 사무(30.1%)로 가장 많은 사무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는 코드 3번(생활이 어려운자의 보호 및 지원 사무)으로 총 62개(23.3%)의 사무가 여기에 해당되고, 세 번째로는 코드 0번(하나의 법률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구분 중 2개 이상이 관련된 사무)에 해당되는 총 46개(17.3%)의 사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코드 2(사회복지시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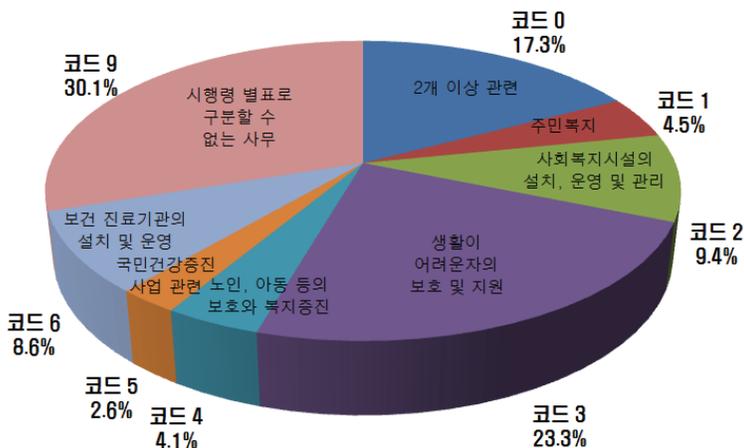
설치·운영 및 관리 사무)가 총 25개(9.4%), 코드 6(보건 진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총 23개(8.6%), 코드 1(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총 12개(4.5%), 코드 4(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총 11개(4.1%), 코드 5(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는 총 7개(2.6%)의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코드 8번(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해당되는 사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간단한 표로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적용한 법령상 지방사무 분포

분류	0	1	2	3	4	5	6	7	8	9
개수	46	12	25	62	11	7	23	0	0	80
비율	17.3%	4.5%	9.4%	23.3%	4.1%	2.6%	8.6%	0%	0%	30.1%

이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분포 상황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의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노인복지사무 중 법령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266개 사무 중 126개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하여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상의 기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되지 않는 사무가 전체의 47.4%로 나타났다. 더욱이, 많은 법률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시에 사무의 주체로 지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의 10가지 기준에 따라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여 예시한 것은 다음의 <표 3-4>와 같다.

**<표 3-4>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적용한 법령상 지방사무 분류(예시) : 부록 참고**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1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7조	인구정책 수립·시행	인구정책 수립·시행	0
		8조	자녀의 출산·보육 시책 수립·시행	자녀의 출산·보육 시책 수립·시행	0
2	치매관리법	3조	국가 등의 의무 (치매관리사업 시행 등)	국가 등의 의무 (치매관리사업 시행 등)	5
		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4조의3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	9
		15조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2
4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시책수립·시행)	국가 등의 책무 (시책수립·시행)	4
		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경비지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경비지원)	4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5	사회보장 기본법	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 결정	사회보장급여 수준 결정	3
		22조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3
6	노인복지법	4조	보건복지 증진 시책 추진	보건복지 증진 시책의 추진	1
		26조	경로우대(이용요금 할인 및 할인권유)	경로우대(이용요금 할인 및 할인권유)	4
7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6
		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설치·운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설치·운영)	2
8	건강검진 기본법	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상담·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상담·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5
		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의 의료비지원 등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의 의료비지원 등	5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의접수,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의접수,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3
		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9
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호~제4호사업:보조기기교부대여및사후관리 등사례관리, 정보제공, 품질관리, 연구개발지원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호~제5호사업:보조기기교부대여및사후관리등사례관리, 정보제공, 품질관리, 연구개발지원등)	0
		8조	보조기기 교부 등 (보조기기교부대여또는사후관리, 비용지급등)	보조기기 교부 등 (보조기기교부대여또는사후관리, 비용지급등)	4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사무예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 따른 한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정함으로써 법령제정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배분하는데 한계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령제정 시점에서의 주민의 욕구와 현재의 주민의 욕구가 상이하며, 법령제정시점에서의 다른 법률들도 변화하여 꾸준히 제·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류 기준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사무집행유형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사무의 집행유형은 노인복지 관련 법령 중 표본을 추출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135개의 법령상 사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 8개 법령 135개 조문 분석을 위해 집행행위를 3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신청, 신청접수, 신고접수, 현장조사 확인, 감독, 면허, 인가, 허가, 승인, 인증, 등록, 자료요청, 타기관통보, 통보의 접수, 타기관요청, 요청의 접수, 보고, 보고접수, 시설설치, 지정, 처분, 과태료부과징수, 청문, 결정, 고시, 고지, 계획수립, 연구개발, 교육의견수렴, 협의, 심의, 지급, 발급, 서비스집행 등 34개의 서비스 유형 중 서비스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집행사무이며, 다른 유형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무 또는 공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에 해당한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복지 사무의 집행유형 중 34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21개(15.56%)이며, 두 개 이상의 유형에 모두 포함되는 사무는 27개(20%)로 나타났다. 또, 타기관으로 통보하는 사무는 전체의 14.1%로 나타났다. 지정



〈표 3-5〉 행정행위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무 분포

분류	신청	신청 접수	현장 조사	확인	자료 요청	타기관 통보	타기관 요청	보고	보고 접수
개수	1	7	6	9	2	12	7	3	1
비율	0.7%	5.2%	4.4%	6.7%	1.5%	8.9%	5.2%	2.2%	0.7%
분류	시설 설치	시설 폐지	금지	지정	지도 단속	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청문	결정
개수	8	1	1	10	1	5	1	1	10
비율	5.9%	0.7%	0.7%	7.4%	0.7%	3.7%	0.7%	0.7%	7.4%
분류	고시	계획 수립	연구 개발	교육	협의	심의	지급	발급	
개수	10	8	1	2	3	0	1	3	
비율	7.4%	5.9%	0.7%	1.5%	2.2%	0.0%	0.7%	2.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기능을 분류하는 경우, 사무배분의 명확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개 이상의 기준에 중복되어 분류되는 사무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노인복지 사무의 분류체계를 사무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행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사무배분이 용이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사무의 34개 집행유형에 속하는 사무의 분포 현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3-6>과 같다.



## 제3절 기능배분의 문제점

### 1. 기능배분의 기준과 원칙의 문제점

현재의 사무배분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상 사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을 준거로 중앙정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일한 사무배분 기준으로 제시된 법령상의 사무배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법령상 사무 중 대부분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의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기준은 사업의 목적 단위로 구분되어 법령상 사무의 배분에 적절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은 행정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목적에 초점을 두고 사무를 구분한다. 이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사무에 대한 분류가 어렵고, 법률의 목적에 따른 구분수준에 그친다. 즉, 법률에서 지정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단위로 구분된다. 이 경우, 법률이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의 목적으로 사무배분이 완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사무배분의 기준은 법률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정행위가 되어야 한다.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의 분류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역소방에 관한 사무 등 6가지를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이상의 제시된 6종류의 사무에 한정

되어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하고 있다. 이 기준에 개별법령을 조항별로 대입하면,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된 법령조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류 기준(6개 항목)에 적용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총18개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서 추출한 266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126개의 사무는 분류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무 추진체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의 사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항목으로 분류되나,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항목 중 일부에 한정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조직은 노인복지기능을 별도의 기능으로 분리하여 부서를 설치하기도 하고, 아동복지 또는 여성복지 등의 기능과 결합하여 부서로 설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부서별 업무분장을 작성하는데 특정부서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실무부서의 단계에서, 노인복지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사무가 다양한 부서에 산재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 2. 기능배분 실태의 문제점

현행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상 사무배분 체계는 대상별·법률조문단위별 배분이다.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내부의 부서별 기능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노인복지에 관한 법률은 총 44개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법률 중 18개 법률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노인복지사무의 주관부서에 대한 표현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노인복지 관련 법률체계에서 노인복지를 포괄하는 기본법성격의 법률이 부재한 한계가 있다. 현행의 노인복지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법률별로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각각의 개별 법률들의 지향점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이 존재

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법률들로서 노인복지의 세부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각 기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노인복지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노인복지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에 관한 다양한 목적을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률의 조문에서 사무배분의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 개별 법률의 조문에서 중앙-지방 간의 사무배분 표현형식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으로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 또, “담당 기관은…”, “소관 부처는…” 등으로 사무의 주관부처를 애매하게 표현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사무의 관할을 서로 주장 또는 회피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노인복지 관련 법령상 기능배분의 문제점으로 법률 체계 내의 기본법의 부재에 따른 효율적·효과적인 노인복지의 정책목표 설정 및 효율적 추진체계의 부재와 법조문에서 해당 사무에 대한 주관의 지정이 불명확함에 따른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모호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선,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법의 역할과 개별법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노인복지기본법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하여 노인복지 기능의 체계를 일관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기본법에서 구체적인 노인복지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기보다는 노인복지의 핵심기능 별로 개별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기능을 기준으로 한 법률정비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의 합리성·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기본법으로 노인복지의 경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시된 노인복지기능을 건강관리, 요양, 소득증진, 사회참여, 경로우대, 복지시설, 주거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별 법률로 정비함으로써 각 중심기능별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4장

##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배분의 실증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 제4장

#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배분의 실증분석

KRILA

## 제1절 분석의 개요

### 1. 조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앙-지방 간 적정한 노인복지기능 분담 방안을 모색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행정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 등의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노인복지에 관한 44개 전체 법률에서 추출한 1,424개 조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수조사 하였다.

전문가 의견수렴분야는 1,424개 조문별 법령상 사무의 성격, 위탁가능성, 그리고 중앙-지방 간 배분 등이다. 첫째, 법령상 사무의 성격은 기획적 성격, 관리적 성격, 집행적 성격으로 제시하여 개별 법 조항별 사무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위탁가능성은 사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와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셋째, 중앙-지방 간 배분은 조문별 법령상 사무의 수행을 중앙에서 담당하는 것, 또는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의 타당성 인식에 관한 것이다.

## 2. 조사 설계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노인복지에 관한 총4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1,424개의 사무를 규정하는 법률조항을 추출하였다. 법령상 사무를 분류하고, 중앙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로 배분하기 위해 법률조항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법률의 ‘항’ 단위를 기본단위로 사무를 추출하였다. 하나의 법령 조‘항’을 하나의 사무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개별사무를 대상으로 사무의 성격(기획, 관리, 집행), 사무의 범위(위탁 가능/불가능), 그리고 사무배분(중앙사무, 지방사무) 등에 관한 의견(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행정분야를 포함한 유관학문분야(정치·경제·사회 등)의 박사학위를 갖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사무배분에 관한 의견(인식)조사로서, 응답자는 개별 사무에 관한 이해는 물론이고, 중앙-지방 간의 사무배분 기준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박사학위를 갖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증조사 대상을 한정하였다. 유관학문분야의 교수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는 설문조사 인 바, 설문지는 100부를 배포하였다. 응답률은 38%이며, 분석에 사용된 유효설문은 33부이다.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4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이며, 응답자의 공개된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다. 표본의 수집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회원명부 중 무작위로 300명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에 대해 설문지 발송 전, 훈련된 조사원이 응답대상자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설문의 목적과 응답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문항은 1,424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각각의 사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으로 설문지 회수기간을 6주로 설정하였다.

### 3. 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에 관한 법령상 사무의 주요 성격, 민간위탁가능사무, 중앙-지방사무에 관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개별 법률의 ‘항’단위에서 지정하는 사무별로, 성격을 분류하고, 민간위탁가능여부 및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빈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사무의 성격별 민간위탁가능 여부 및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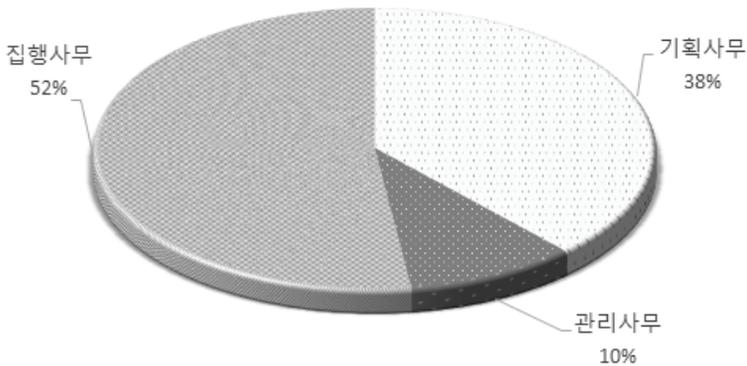
## 제2절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앙-지방 간 적정한 노인복지기능 분담 방안을 모색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1. 사무의 성격

분석결과, 총 44개 법률 1,424개 법조항 중 기획사무로 분류된 비율은 평균 537개 (38%)이며, 집행사무로 분류된 비율은 평균 735개(52%)이다.

〈그림 4-1〉 노인복지사무의 성격별 분류



### (1) 기획사무

조사 응답자 전원이 기획사무로만 분류한 사무는 총 46개 사무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정비 및 정책수립사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도와 여건조성 및 시책강구, 가족해체예방 제도와 시책강구,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국가건강검진계획, 건강검진종합계획의 국회보고, 고령친화사업진흥법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고령친화산업발전 기본방향 계획수립,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등이다.

〈표 4-1〉 노인복지사무 중 기획사무 분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법령정비 및 정책수립
건강가정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강구 추진
	가족해체예방	제도와 시책 강구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확정(국무회의심의)
건강검진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건강검진 계획
	건강검진종합계획	국회 보고
고령친화사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에 포함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고령친화산업발전 기본방향 계획 수립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고령친화사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계획 수립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 등의 책무	교통약자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5년단위의 계획(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협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국민연금법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국민연금기금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기금 관리 운용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연금법	기준연금액의 산정	기준연금액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 결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업인들의 평생교육지원	평생교육기회확대 시책 마련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지정구역의 지정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의 수립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적 추진 시책마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기회보장 등 정책 수립 실시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포함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인근지역의 보행환경정비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수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공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급여 제공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매 4년) 및 연차별 계획 수립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사책의 개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자살예방 기본계획 통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설치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행
	설치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치매관리법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치매관리 사업 계획
환경보건법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노인 임신부 등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이상의 기획사무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에 포함 사무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협의 사무에 대해 각각 국가사무로 인식하는 응답이 78%(27명)이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는 응답이 22%(6명)로 나타났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69.7%(23명)이 국가사무로 응답하였고, 18.2%(6명)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응답하였으며, 12.1%(4명)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응답하였다.

기획사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무는 치매관리법의 치매관리사업계획 수립 사무로 전체 응답자의 75.8%(25명)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였으며, 12.1%(4명)은 국가사무로 분류하였고, 다른 12.1%(4명)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중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통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사무에 대해 광역사무로 분류하는 비율(30%, 10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매4년) 및 연차별계획수립 사무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사무는 총 응답자 33명 중 87.9%(29명)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였고 12.1%(4명)이 국가사무로 분류하였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매4년) 및

연차별계획수립 사무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33명 중 57.6%(19명)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였고, 42.4%(14명)이 국가사무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시책마련,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공동형 농어촌 주택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의 수립,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적 추진시책마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인근지역의 보행환경정비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등의 사무에 대해 총 응답자의 30%(10명)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였고, 70%(23명)은 국가사무로 분류하였다.

## (2) 관리사무

조사 응답자 전원이 관리사무로만 분류한 사무는 없으며, 상대적으로 관리사무로 분류한 비율이 높은 사무는 총41개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교육훈련 시설의 설치·운영,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설치 및 운영 권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사항 보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결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역보조기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등 7개 사무는 조사응답자 중 87.9% (29명)이 관리사무로 응답하였다.

관리사무로 분류된 사무들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의 결정,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지원 사무의 경우, 응답자 전원(29명)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였다. 또,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사항의 보고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한 비율

(63.6%, 21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수교육 실시 사무는 위탁사무로 분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57.6%, 19명; 전체응답 33명중 10명 무응답)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사무는 기획사무와 집행사무의 중간단계로 전문가들은 5.18 민주유공자의 교육지원이나 취업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직업훈련 등과 같은 사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 관련기관 시설과의 연계 등과 같은 사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설치 등과 같은 사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무,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사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사무, 노인재개복지시설의 설치 사무, 지역노인전문보호기관의 설치 사무,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사무 등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의 관리사무는 광역사무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리사무 중에서 전문가들이 기초사무로 분류한 사무로는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 운영 사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업장 이용편리를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 보수 등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사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각지대 발굴기관 등 포함 운영 사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운영 사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 사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사무,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사업에 관한사항 결정 사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지역보조기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사무, 노인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무,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운영 사무, 노인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무 등이 있다.

관리사무 중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이행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하였다.

### (3) 집행사무

전체 응답자 중 전원이 집행사무로만 분류한 사무는 총 71개 사무로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구강보건법, 교통약자 이용증진법, 공익신탁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법령상 사무이다

〈표 4-2〉 노인복지사무 중 집행사무 분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치매관리법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업무위탁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보조기기 센터	시군구에 지역센터 설치 운영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과태료	과태료 부과장수
	지도 감독 등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현장 검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태료	과태료 부과장수
노인복지법	학대피해노인 전용상담센터의 설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숙소제공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조사 요청
		노인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조사 요청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	직무 상 신고의무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긴급전화의 설치 등	긴급전화 설치	
상담입소 등의 조치	상담지도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초연금법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독촉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구강보건법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의 실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실태조사	기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
		보행환경실태 조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조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공익신탁법	합병인가	합병인가 신청서 제출(접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접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긴급임시조치 취소
		임시조치의 신청(청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작성
		긴급임시조치 집행
	임시조치의 청구 등	임시조치 미신청시 사유 보고
		임시조치의 청구
		임시조치의 청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의료기관으로 인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의 폐지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지 시 신고접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결손처분
		보조금 환수
	수송시설 이용 지원	수송시설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양로지원 등의 위탁	양로지원 위탁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조금 지급 신청
		본인부담액 일부 보조
	양로지원	양로시설 지원
	대부의 승계	채무승계 신고(접수)
	담보 등	저당권 말소
		채권보전조치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대부의 신청	대부
		대부신청 접수
대부	대부	
보철구 지급	보철구 지급	
진료	감면된 비용지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진료	비용부담
		진료
	의료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 신청접수
	학습보조비의 지급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 신청	자료 또는 정보제공 등의 서 제출
		교육지원 신청
	신상변동의 신고 등	자료제출 요구
		신상변동에 따른 조치 통보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상변동 신고		
등록 및 결정	등록신청	

이상의 집행사무 중에서 노인복지법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노인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사 요청, 노인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사요청, 노인학대 신고접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국민연금법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공익신탁법의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접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제출(접수)등은 국가사무로 분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69.7%), 국가사무로 분류하지 않은 응답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였다.

노인복지법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숙식제공 등의 기능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57.5%) 나타났다. 다만, 그 외의 모든 집행사무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행사무 중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무는 59개 사무로 나타났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25개 사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운영 중단 또는 폐지 시 신고 접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 2개 사무, 가정폭력범 외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의료기관으로 인도, 임시조치의 청구, 임시조치 미신청시 사유보고, 긴급임시조치 집행,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작성, 긴급임시조치 취소 등 11개 사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의 조사, 보행환경실태조사, 교통수단·여객시설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 기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6개 사무, 구강보건법의 구강보건사업, 기초연금법의 환수금 독촉, 노인복지법의 상담지도, 긴급전화설치,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행위자 대상의 재발방지교육, 직무상 신고의무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 접수,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7개 사무, 그 외 노인장기요양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가 도출되었다.

## 2. 민간위탁 가능사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제시된 사무는 총 33명의 유효설문중 19명 이상이 위탁 가능한 사무로 분류한 사무를 기준으로 총 36개 사무이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제시된 사무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양로 지원 등의 위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보수교육 등, 고령친화사업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양로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민연금법의 노후준비서비스,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노인복지법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노인복지주거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입소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실종노인 발생 예방 등,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활동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의 사무는 현재 위탁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위탁가능사무로의 분류에 해당한다. 즉,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의 타당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노인복지사무 중 민간위탁 가능사무 분류

(단위: 빈도)

법령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위탁 가능
건강가정기본법	민간위탁	23	0	10	23	0	10	2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양로지원 위탁	0	0	33	0	4	29	19

법령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위탁 가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탁	23	10	0	23	4	6	19
	위탁	23	4	6	23	4	6	19
	전문기관 위탁	4	25	4	4	19	10	19
고령친화사업진흥법	고령친화관련 기관에 위탁	4	10	19	4	10	19	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	4	10	19	23	10	0	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육위탁	8	0	25	23	0	10	19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위탁	8	0	25	23	0	10	19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4	0	29	23	0	10	19
	공단에 위탁	23	4	6	23	10	0	19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	23	0	10	23	0	10	19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4	0	29	23	0	10	19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4	0	29	23	0	10	19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4	0	29	23	0	1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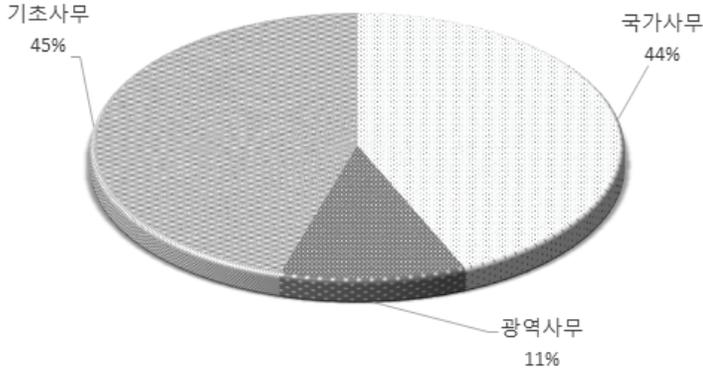
법령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위탁 가능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4	0	29	23	0	10	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 관 위탁운영	0	0	33	23	0	10	19
	실종노인 발생예방 등 업무 위탁	4	0	29	4	0	29	19
	쉼터 운영 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	4	0	29	23	0	10	19
대한노인회 자원에 관한 법률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활동	4	3	26	4	0	29	19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활동	4	3	26	4	0	29	19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	4	0	29	4	0	29	19
	노인취업활동 및 노인사회적기업지원	4	0	29	4	0	29	19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4	0	29	4	0	29	19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활동	4	0	29	4	0	29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활동	4	0	29	4	0	29	19
	대한노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4	10	19	4	0	29	1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자원 위탁	4	0	29	4	0	29	19

법령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위탁 가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원계획 수립 이행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위탁	4	10	19	4	0	29	19
	지역사회보장균형발 전지원센터 위탁	19	0	14	4	0	29	19
사회복지사업법	위탁	4	0	29	4	0	29	1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업무위탁	4	0	29	23	0	10	19
	지역센터의 운영 위탁	4	0	29	4	0	29	19
치매관리법	업무위탁	0	0	33	4	0	29	19
	업무 위탁	4	0	29	4	0	29	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4	0	29	23	0	10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권리소멸 판정을 위한 사실조사	23	0	10	29	4	0	4

### 3.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국가사무로 분류된 사무는 평균 620개(44%)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된 사무는 평균 162개(11%),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된 사무는 평균 647개(45%)이다.

〈그림 4-2〉 노인복지사무의 중앙-지방 간 배분



### (1) 국가사무

조사대상 사무 1,424개 중 상대적으로 국가사무로 분류되는 비중이 높은 사무는 763개 사무(국가사무로 인식하는 비율이 광역사무 또는 기초사무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많은 사무)이고, 모든 응답자가 국가사무로만 응답한 사무는 34개 사무이다. 먼저, 모든 응답자가 국가사무로만 응답한 사무는 치매관리법의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의 수립 사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무, 기초연금법의 기준연금액 고시, 국민영양관리법의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의 통보 국민연금법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이 국가사무로 분류되었다.

〈표 4-4〉 노인복지사무 중 국가사무 분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차매관리법	중앙차매센터의 설치	차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급여 제공 계획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준연금액 고시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통보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국민연금법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기금 관리 운용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국민연금기금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5년 단위의 계획(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국가 등의 책무	교통약자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고령친화사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계획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계획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계획 수립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고령친화산업발전 기본방향 계획 수립
건강검진기본법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건강검진 시행
	건강검진 종합계획	국회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건강검진 계획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확정된 기본계획의 통보
		기본계획의 확정(국무회의심의)
		기본계획 수립
	가족해체예방	제도와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강구 추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예산상 조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시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법령장비 및 정책수립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상기한 국가 사무 중 23개 사무는 기획사무로만 분류되었으며, 3개 사무는 집행 사무로 분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영양관리법의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통보 사무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양로시설에의 지원에 대해 응답자 모두는 국가사무로 분류한 동시에 응답자 중 58%(19명)은 집행사무로 분류하였다. 또, 국민영양 관리법의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사무는 집행사무로 분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관리사무

로 분류하는 응답자(7명)와 기획사무로 분류하는 응답자(11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특히,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나, 응답자 중 26명은 국가사무로 분류하였고, 7명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광역자치단체 사무

전체 응답자 중 제시된 법령상 노인복지 사무 1,424개 중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만 지정한 사무는 나타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무는 총 96개 사무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된 96개의 사무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자료제출요구, 관계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계획의 변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진원계획의 수립, 저상버스 운행사업자에게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우선면허,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저상버스 도입 등 12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한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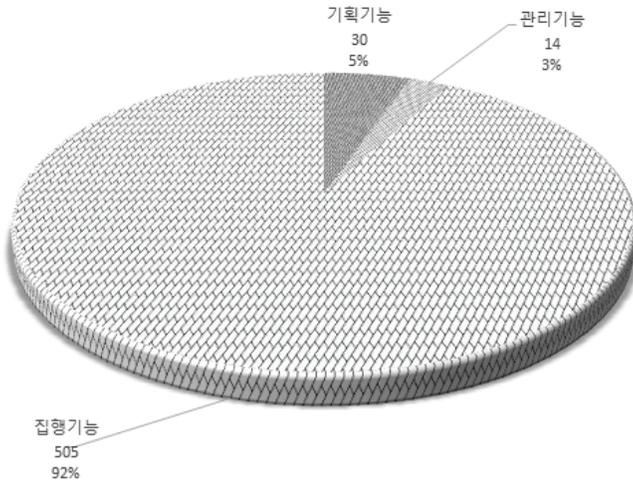
〈표 4-5〉 노인복지사무 중 광역자치단체 사무 분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29	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자료제출 요구	4	29	0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관계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4	29	0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4	29	0	
		계획의 변경	4	29	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4	29	0	
		협의	4	29	0	
	노선버스의 이용보장 등	저상버스 운행사업자에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우선면허	4	29	0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시설물장비 및 저상버스 도입	4	29	0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4	29	0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4	29	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행	4	29	0	

### (3)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조사대상 사무 1,424개 중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무는 총 549개 사무이다. 이중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만 분류된 사무는 없으며, 549개 사무 중 총 424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되지 않은 사무이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교육실시 및 보고, 긴급구조지원, 치료보호,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응급조치, 임시조치 청구, 긴급임시조치,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정에 대한 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건강가정교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실태조사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이행 강제금 부과 정수, 노인복지법의 노인보호기관 설치, 긴급전화설치,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 교부, 응급조치,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은 국가사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4-3〉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성격 분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된 사무 중 기획기능으로 분류된 사무가 30개, 관리기능 14개, 그리고 집행기능이 505개이다. 기획기능은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개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연차별계획수립, 여가생활시행계획수립,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등 30개 기능이다. 관리기능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지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이동편의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사항 보고,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대장 작성 보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실태점검 및 유지보수 등 14개 기능이다. 집행기능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지도·감독, 컴퓨터설치, 보호기관설치, 양로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교육, 보조금지급, 신고의 접수, 등록 및 결정 등 대부분의 사무를 포함한다.

〈표 4-6〉 노인복지사무 중 기초자치단체 사무 분류(예시) : 부록 참고

(단위: 빈도)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담소의 설치운영	상담소 설치 운영	4	6	23	4	0	29
건강기정 기본법	가정에 대한 지원	인정된 주거생활지원	4	0	29	8	0	29
구강보건법	보건소의 구강보건 시설 설치운영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 운영	0	19	14	4	0	29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0	0	33	4	0	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고령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실태조사	19	10	4	4	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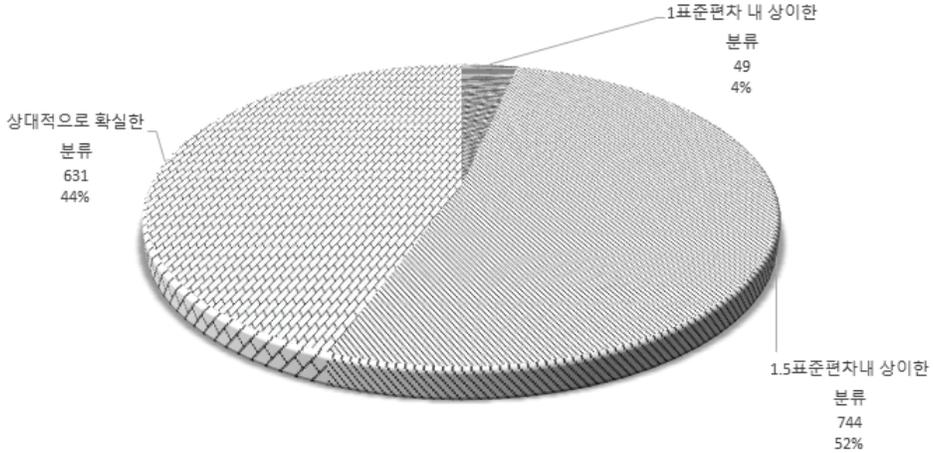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	대한노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4	10	19	4	0	29
도로교통법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안전 조치	4	6	23	4	0	2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양로지원	국가양로시설에서의 양로지원	4	3	26	4	0	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4	10	19	4	0	2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보행환경 검토	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노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 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접수)	23	0	10	4	0	29
사회복지 사업법	지역사회 복지 협약체	지역사회복지협약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19	6	8	4	0	29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설치 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제출	23	10	0	4	0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빈 점포의 활용 촉진	노인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10	19	4	0	29
치매관리법	치매 상담전화 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전화 센터의 설치 운영	19	10	4	4	0	29

#### 4.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모호성 비교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 중 중앙(국가)사무로만 분류된 사무는 34개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만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중앙(국가)사무에서 배제되는 사무는 총 39개 사무이다. 다만, 국가사무가 아닌 사무로 분류된 사무는 모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령상 사무이다. 중앙(국가)사무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된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무는 총 660개 사무이며, 이중 상기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 39개를 제외하면 총 621개 사무이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된 빈도보다 중앙(국가)사무로 분류된 빈도가 더 많은 사무는 총 764개 사무이다. 특히, 이 중 629개의 사무는 중앙의 사무로 분류되는 사례가 2:1의 비율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로 분류한 빈도의 편차가 1표준편차 이내의 구간(12명 이상이 중앙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분류한 구간)에 있는 사무는 3.4%(49개 사무)이다. 또 사무분류의 편차가 1.5표준편차 이내의 구간(8명이상이 중앙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분류한 구간)에 있는 사무는 52.2%(744개)사무이다. 결과적으로 법령상 노인복지사무는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이 매우 모호한 수준에 있지 아니하나, 확실하게 구분되기에 미흡한 중간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4〉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모호성 비교



〈표 4-7〉 노인복지사무 중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이 모호한 사무(예시) : 부록참고

(단위: 빈도)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14	10	9	14	4	15
노인복지법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설치	4	19	10	14	9	10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관리운영 기관 등	등급판정 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4	0	29	14	9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매 4년)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3	0	0	14	0	1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	추천할 취업대상자 수 결정	15	8	10	19	14	0
건강검진기본법	조사 연구사업 등	건강검진의 홍보	19	0	14	19	0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승인	수익사업에 대한 (변경)승인	4	10	19	19	10	4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노령 연금 지급	8	0	25	19	3	7
노인복지법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19	0	14	19	0	1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23	0	10	23	0	10
건강가정기본법	교육연구의 진흥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23	10	0	23	10	0
건강검진기본법	국가건강 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확진을 위한 검시 비, 의료비 등 지원	23	0	10	23	0	10
고령친화사업 진흥법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	23	10	0	23	10	0
공익신탁법	공익신탁의 인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수자에 대한 인가	4	10	19	23	10	0
공익신탁법	조세감면 등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4	0	29	23	6	4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 설치	4	19	10	23	0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23	10	0	23	7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류에서 12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만 분류되었다. 반대로 총1,424개 사무 중 424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만 분류되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된 빈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된 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 빈도가 29이상인 사무 중 1:2 비율 이내) 사무는 총86개 사무이다.

중앙사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확실하게 분류되지 않은 사무의 수는 5개이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제안서 검토 평가 후 협상대상자 지정 등 5개 사무에 관해서는 중앙(국가)사무로 응답이 14명,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응답이 9명,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응답이 10명으로 나타났다.

〈표 4-8〉 노인복지사무 중 중앙-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이 모호한 사무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긴급전화 센터의 설치 운영 등	관련기관 시설과의 연계	4	19	10	14	9	10
노인복지법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설치	4	19	10	14	9	10
	비용의 부담	노인복지시설 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4	19	10	14	9	10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관리운영 기관 등	등급판정 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4	0	29	14	9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부문의 사업제한 등	제안서 검토 평가 후 협상대상자 지정	4	0	29	14	9	10



# 제5장

##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







### 제1절 연구의 요약

한 국가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18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야 하는 만큼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인구의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첫째, 노인복지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을 주간이나 단기로 보호할 수 있는 재가봉사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이 계속 생활해 오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동안 하드웨어(Hardware)로서 시설증설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각종 복지시설과 이용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노인복지기능의 확대 및 복지비 지출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 및 복지비 분담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정의 중요한 목표인 지방분권에 따라서 중앙의 기능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고 있으나, 이양기능의 80% 이상이 집행적 성격의 사무라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방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있다. 또한, 중앙이 재원을 독점하고 있어서 지방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다른 기능들이 소외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법령상 노인복지사무의 중앙-지방 간 재배분 기준을 모색하고,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사무를 재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령상 사무를 분석하였다. 먼저, 법령상 사무 중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법률의 범위를 확장하여 44개 법률 1,424개 사무에 대해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중앙의 사무로 총48개 사무가 분류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12개의 사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424개의 사무가 분류되었다. 또, 사무분류가 모호한 사무는 629개로 분류되었다. 그 외의 331개 사무는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서 일방적이거나, 모호한 수준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무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먼저, 노인복지 사무분류체계는 행위중심의 사무분류체계의 재설정 및 조례로서 행정입법의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 사무를 재분류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노인복지사무를 배분한다.

## 1. 법률목적 중심에서 행위 중심의 기능분류체계

법령상 노인복지 사무의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은 모호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10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국가)이 처리해야 할 사무로 외교·국방·사법·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물가정책·금융정책·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총7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무의 목적과 범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구분 기준의 제시에서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의 시·도의 사무는 행정 처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산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 총 6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앙(국가)사무의 분류와 동일하게 사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령상 사무 배분에서 법령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하는 것으로는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부합하는 사무배분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사무 중 표본을 추출하여 행위기준의 사무분류와 법률목적 기준의 사무분류를 통해 분류의 모호성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상 노인복지사무의 일부를 추출하여 법률목적 기준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무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무를 구분하여 미분류 사무의 수를 비교하였다. 즉, 각각의 기준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기준에 모두 속하는 사무의 수와 어느 기준에도 속하지 않는 사무의 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법률 목적을 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한 경우보다 행위 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한 경우, 미분류 사무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행정행위를 새로운 기준으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관

계를 설정하고, 정부 간 관계로부터 각각의 역할을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근원적인 목적이 주민복리의 증진이고, 지방분권의 효율성은 주민과의 근접행정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바, 주민과 가까이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부의 행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하고, 전국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는 사무를 중앙정부의 사무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배분을 위해, 사무배분의 기준은 법률의 목적이 아니라,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무를 분류하는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노인복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의 범위, 대상, 방법, 향후의 바람직한 노인복지 상태를 제시하고, 노인복지의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로서 세부사무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노인복지 기본법은 법률단위 그대로 중앙(국가)사무로 한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세부항목의 결정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

현행법령체계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행정입법이 (지방)의회입법을 제약하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한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정에서 구체적인 기준·행정행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노인복지 사무의 중앙-지방 재배분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법령상 노인복지사무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재배분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노인복지 사무의 유형을 기획사무, 관리사무, 집행사무로 분류하고, 중앙(국가)사무, 광역자치단체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배분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 사무의 재배분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중

양(국가)사무는 기획사무와 일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구하는 관리 사무를 중심으로 배분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심으로 재배분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주민과의 근접거리에서 집행되어야하는 집행사무와 기획 사무를 중심으로 배분하였다.

### (1) 중앙(국가)사무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사무 중 중앙(국가)사무는 총 47개 사무로 분류하였다. 법률에서 국가 등의 책무로 국회가 중앙정부의 사무로 지정한 사무를 포함하여 기획기능을 중심으로 배분하였다.

〈표 5-1〉 노인복지사무 중 중앙(국가)사무 분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법령정비 및 정책수립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종합적인 사책 수립 시행
		예산상 조치
건강가정 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사책 강구 추진
	가족해체예방	제도와 사책 강구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확정(국무회의의심)
		확정된 기본계획의 통보
건강검진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건강검진 계획
	건강검진종합계획	국회 보고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건강검진 시행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고령친화 사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고령친화산업발전 기본방향 계획 수립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고령친화산업 기본조성 계획 수립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계획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결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 등의 책무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5년 단위의 계획(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민건강 증진법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국민연금법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국민연금기금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기금 관리 운용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국민영양 관리법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통보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준연금액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지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급여 제공 계획 수립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치매관리법	중양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관리소멸 판정을 위한 사실조사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개발 및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발전 계획의 수립 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포함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국회에 대한 보고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환경보건법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의 변경
	환경보건종합 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결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보호시설 육성 지원
고령친화사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에 포함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협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로지원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국민영양관리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총 646개 사무로 분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심으로 배

분하였다. 주민과 최근접 거리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배분하되 기획기능을 일부 포함하였다.

〈표 5-2〉 노인복지사무 중 지방(기초)사무 분류(예시) : 부록참고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진료	진료	보훈병원	진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집행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법원 결정 전	긴급 임시 조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실시	교통사업자 대상 교육	교통사업자 대상 의무교육	
구강보건법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사업의 실시			진단 및 교육
노인복지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 노인치유 프로그램 제공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제공	
건강가정 기본법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사 배치		건강가정사 배치	인력배치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회계 구분 관리	보험료 부과	보험료 부과 고지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전문지원기관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전문 지원 기관 경비보조	예산지원 (출연, 보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	노인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대한노인회 위탁사무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상담 교육	자살예방 상담교육 비용지원	노인복지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 교육 실시	자살예방 상담 교육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시설의 수리 및 입차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노인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이용 지원		포괄적 사항
치매관리법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 및 진단비용 지원	비용의 지원	치매검진 수검비용 지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	노인수용자의 특성에 알맞은 차우를 제공하는 전담교정 시설에 수용	노인전담 교정시설에 수용 결정	

## 제2절 정책건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노인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기능의 배분기준이 되는 법률체계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인복지 기능의 배분기준에 따라서 현행 노인복지기능이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복지 기능의 중앙과 지방 간 배분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법률체계와 노인복지법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현행법률체계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예시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 노인복지법의 법령이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산재하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시를 열거하여 법령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령체계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목적에 따라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사부배분체계에 혼선이 발생한다. 또, 노인복지 기능을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별로 기능을 배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에 따른 기구설치의 한계로, 부서별 기능배분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현행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사무구분체계는 노인복지사무의 배분에 실효성의 한계를 갖는다. 지방자치를 재개한 1990년대 이후로, 사회복지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을 모두 예시로 열거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한 노인복지사무의 중앙-지방 간 배분은 필연적으로 모호성이 발생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로, 노인복지기능의 배분 기준을 개

선하여야 한다. 현행의 법률목적 중심의 노인복지사무 배분체계는 기준이 모호한 한계를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노인복지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전체사무의 40%이상의 사무는 어느 기준에도 속하지 않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준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을 통해 타당한 사무배분에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행령에 개정된 [별표 1]을 담기 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개정된 [별표 1]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의 사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전달 조직은 제각기 대상의 특성과 전문성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 제공 조직의 업무 범위와 업무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실무부서의 단계에서 노인복지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의 기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복지사무를 개정된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통합하고 통합된 업무를 수행할 조직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개선된 노인복지기능의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기능을 재배분하여야 한다. 대상별·법률조문단위별 혹은 법률 목적별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상 사무배분 체계를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별 기능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령상 사무배분 체계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복지 관련 법률체계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다양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을 노인복지를 포괄하는 기본법성격의 법률을 제정하여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기능을 기준으로 한 법률정비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의 합리성·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본법으로 노인복지의 경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시된 노인복지기능

을 건강관리, 요양, 소득증진, 사회참여, 경로우대, 복지시설, 주거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별 법률로 정비함으로써 각 중심기능별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노인복지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법률별로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각각의 개별 법률들의 지향점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보건처, 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 관련 법률의 조문에서 사무의 기획과 추진 주체를 중앙정부 혹은 광역, 기초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별 법률의 조문에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기관은…”, “소관 부처는…” 등으로 사무의 주관부처를 애매하게 표현한 중앙-지방 간의 사무배분 표현형식은 “보건복지부는…”, “시도는…”, “시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 간 사무의 관할을 서로 주장 또는 회피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노인복지 등 법령체계는 중앙부처의 시행령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한계를 규정하는 비민주적인 법률체계이므로, 시행령의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무는 결국 국가의 위임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기본법으로 확대 개정하고, 기본법 체계 하에 지방자치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복지 법률체계 역시 노인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복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인복지 기본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적 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은 개별법령으로 규율하는 체계이다. 또한, 개별법령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행

정입법을 지양하고, 현재의 행정입법사항은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법률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중앙(국가)는 장기적인 정책목표, 정책대상, 최소기준(예: National Minimum)을 제정을 주요 기능으로 사무를 배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사항을 관리·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서 결정하되, 이 경우,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결코 비민주적인 법령체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행의 법령상 노인복지 사무의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배분을 위해서는 법률체계의 정비, 즉, 기본법의 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폐지 및 현행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제정, 그리고 구체적인 법률 집행·관리 사항의 조례로의 위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기결정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능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혹은 지역주민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에는 반드시 자기책임이 따른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정하는 논리로서 자기결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자기부담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사안이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도 한정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결정에 따르는 자기책임과 자기부담

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결정권을 통한 자치권이 확대되었다는 측면 보다는 행정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부담의 증가가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단체, NPO, 기업 등을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로 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원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역동적으로 협동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방이 자기결정권을 자기책임의 범위 안에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고제이(20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보건복지포럼 205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현·최덕현·정명은(2014),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분석: 1994-2013, 2014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 김천영(2000), 뉴패러다임으로서의 정부간 관계(IGR): 접근논리와 처방적 모형구상,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광덕(2014),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기능배분 및 권한이양.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49-276.
- 손희준(2013), 사회복지보호금의 중앙·지방 간 분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2013.9, 7-34
- 신진욱·서준상(2016). 복지국가, 지방분권, 지방정치 역사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분권화의 특성. 한국사회정책, 23(4), 61-89
- 송석윤(2001),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법과사회 20
- 이미애(2014),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 이자성(2010), 일본 지역공동체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발표논문집
- 이재원(2012), 사회복지 기능분담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지방재정 2012권 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정세욱(2000), 정부간 관계, 서울: 법문사
- 최항순(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 배분. GRI 연구논총, 12(3), 177-204.
- 현외성(2014),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제와 정책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5, pp. 281-315

## □ 국외문헌

分権型社会に対応する地方行政組織運営の刷新に関する研究会(2005), 分権型社会における自治体経営の刷新戦略: 新しい公共空間の形成を目指して

Franzius, C. (2003) Der Gewährleistungsstaat Ein neues Leitbild für den sich wandelnden Staat? Der Staat Bd.42 Hf 4, Duncker-Humbolt.

Miserandino, Miserandino (2013). 《최신 연구에 기초한 성격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78쪽.

## 【부 록】

〈표 1〉 노인복지관련 사무의 담당주체별 분류

연번	법률명	조항	사무명	분류	
				국가 단독 (79)	국가+지방 자치단체 (99)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7조	인구정책 수립·시행		○
		7조의2	인구교육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
		8조	자녀의 출산·보육 대책 수립·시행		○
		9조	모자보건 증진 대책 수립·시행		○
		10조	출산양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 수립·시행		○
		11조	고용과 소득보장		○
		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
		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15조	평생교육·정보화 교육 대책 수립·시행		○
		15조의2	국민의 노후설계 대책 수립·시행		○
		16조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배려		○
		17조	가족관계·세대간 이해증진 사회환경 조성		○
		18조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 대책 수립·시행		○
		19조	고령친화적 산업 육성 대책 수립·시행		○
		20조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수립·시행	○	
		28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
29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조사 및 연구		○		
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		
2	치매관리법	5조	치매극복의 날 시행		○
		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	○	
		10조	치매연구사업 시행	○	
		11조	치매검진사업 시행	○	
		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
		12조의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시행		○
		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시행	○	
		14조	치매 역학조사 시행	○	
		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17조의2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	
18조	치매관리사업 비용의 지원		○		

연번	법률명	조항	사무명	분류	
				국가 단독 (79)	국가+지방 자치단체 (99)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정신질환 실태조사	○	
		12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	
		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	
		21조	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
		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
		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		○
		34조	정신질환자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
		35조	정신질환자 평생교육 지원		○
		36조	정신질환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통합지원		○
		37조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
		38조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77조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의 직업훈련 지원		○
78조	정신질환자를 위한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		
4	노후준비 지원법	5조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6조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	
		7조	노후준비 지표 개발 및 보급	○	
		8조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설치	○	
		9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	○	
		11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양성 교육 실시	○	
		15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11조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적정성 등 평가	○	
		2조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	
5	사회보장 기본법	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
		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령	2조	사회보장 재정추계	○	
		3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19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6	노인복지법	5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	
		6조의2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피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	○	
		8조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자 지원		○
		23조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		○
		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
		24조	노인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

연번	법률명	조항	사무명	분류	
				국가 단독 (79)	국가+지방 자치단체 (99)
6	노인복지법	25조	노인의 생업지원		○
		26조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경로우대		○
		27조	건강진단		○
		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
		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
		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
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39조의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		
7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	○	
		7조	장기요양보험사업 시행	○	
		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15조	등급판정 등	○	
		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	
		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	
		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	
		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
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8	건강검진 기본법	8조	국가검진위원회 설치	○	
		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	
		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
		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	
		14조	검진기관의 지정	○	
		15조	검진기관의 평가	○	
		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
		20조	건강검진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
		7조	수급자격의 조사		○
		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
		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
		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
		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

연번	법률명	조항	사무명	분류	
				국가 단독 (79)	국가+지방 자치단체 (99)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
		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	
		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	
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
		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	
		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	
		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
		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	
		15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	
		17조	보조공학사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	
		21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	
		13조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
		14조	편의시설 연구개발 촉진시책 마련		○
		14조의2	건축사무소 종사자·사실주 등 대상 교육 실시	○	
		5조의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특례	○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6조의2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6조의3	소득인정액의 산정	○	
		15조의2	중앙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	
		18조의4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 자산 형성 지원		○
		18조의5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
		20조의2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29조	급여의 종류·방법 변경		○
13	기초연금법	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	
		9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	
		13조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
14	효행 장려 및 자원에 관한 법률	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	
		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
		6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
		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	

연번	법률명	조항	사무명	분류	
				국가 단독 (79)	국가+지방 자치단체 (99)
1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	
		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
		12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
		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
15	구강보건법	15조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
		15조의2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	
1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	
		28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	
		29조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	
		30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31조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		○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	
		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
		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 조사	○	
		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
		11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12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
		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
		14조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	
		15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18	건강가정 기본법	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17조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19조	교육·연구의 진흥		○
		20조	가족실태조사		○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
		21조의2	위기가족긴급지원		○
		21조의4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
		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
		25조	가족부양의 지원		○
30조	가정봉사원 지원		○		
34조의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			
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표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을 적용한 법령상 지방사무 분류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1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7조	인구정책 수립·시행	인구정책 수립·시행	0
		7조의2	인구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인구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0
		8조	자녀의 출산·보육 시책 수립·시행	자녀의 출산·보육 시책 수립·시행	0
		9조	모자보건 증진 시책 수립·시행	모자보건 증진 시책 수립·시행	0
		10조	출산·양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수립·시행	출산·양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수립·시행	0
		11조	고령자에 대한 고용 및 소득보장 시책 수립·시행	고령자에 대한 고용 및 소득보장 시책 수립·시행	0
		12조	고령자의 건강증진·의료제공 시책 수립·시행	고령자의 건강증진·의료제공 시책 수립·시행	0
		13조	노후 생활환경·안정보장 시책 수립·시행	노후 생활환경·안정보장 시책 수립·시행	0
		14조	노후 여가·문화 등 사회활동 장려 시책 수립·시행	노후 여가·문화 등 사회활동 장려 시책 수립·시행	0
		15조	평생교육·정보화 교육 시책 수립·시행	평생교육·정보화 교육 시책 수립·시행	0
		15조의2	국민의 노후설계 시책 수립·시행	국민의 노후설계 시책 수립·시행	0
		16조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배려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배려	0
		17조	가족관계·세대 간 이해증진 사회환경 조성	가족관계·세대 간 이해증진 사회환경 조성	0
		18조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 시책 수립·시행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 시책 수립·시행	0
		19조	고령친화적 산업 육성 시책 수립·시행	고령친화적 산업 육성 시책 수립·시행	0
		20조	저출산·고령화 지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저출산·고령화 지방시행계획 수립·시행	0
		28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0
		29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조사 및 연구	0
		30조	저출산·고령화정책에의 민간 참여 장려	저출산·고령화정책에의 민간 참여 장려	0
		30조의2	인구의 날 행사 등 실시	인구의 날 행사 등 실시	0
31조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0		
32조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에 따른 조세 감면 등 지원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에 따른 조세 감면 등 지원	0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2	치매관리법	3조	국가 등의 의무 (치매관리사업 시행 등)	국가 등의 의무 (치매관리사업 시행 등)	5
		5조	치매극복의 날 (행사·교육·홍보)	치매극복의 날 (행사·교육·홍보)	9
		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5
		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12조의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1
		16조의 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호~제8호의 사무)		2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4조의3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	9
		8조	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6
		10조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개방요구		6
		12조	정신의료기관 허가 취소·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정신의료기관 허가 취소·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6
		12조의3	정신의료기관 사업정지 과징금 처분	정신의료기관 사업정지 과징금 처분	6
		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추진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추진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 등	6
		13조의2	정신보건센터 설치	정신보건센터 설치	6
		15조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2
		17조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리	2
		18조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2
		20조	정신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청문	사회복귀시설 폐쇄 등	2
		25조		사회복귀시설 시설폐쇄 청문	2
		26조의2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신청 수리 및 진단·치료 의뢰	6
		27조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요청 수리	9
		29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운영	6
		30조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자 등의 퇴원심사 등 청구 수리	6
33조		정신질환자 등의 퇴원심사 등 회부	6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35조	정신질환자 등의 재심청구 수리 및 회부	기초정신보건감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퇴원명령 등	6
		36조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조치 해제	6
		37조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	6
		39조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검사 등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검사 등	9
		47조	정신질환 회복자에 대한 직업지도 등	정신질환 회복자에 대한 직업지도 등	9
		48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촉진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촉진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	9
		49조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9
4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시책수립·시행)	국가 등의 책무 (시책수립·시행)	4
		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경비지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경비지원)	4
5	사회보장 기본법	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 결정	사회보장급여 수준 결정	3
		11조	사회보장급여 신청 수리 및 직권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 수리 및 직권 신청	3
		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3
		22조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3
		23조	사회서비스 보장 정책 마련	사회서비스 보장 정책 마련	3
		24조	소득보장 제도 마련	소득보장 제도 마련	3
		26조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3
		27조	사회보장 민간부문 참여 유도 및 지원	사회보장 민간부문 참여 유도 및 지원	3
		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3
		30조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운영	3
		31조	사회보장제도 전문인력 양성	사회보장제도 전문인력 양성	3
		32조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3
		33조	사회보장제도 정보 공개·홍보	사회보장제도 정보 공개·홍보	3
		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3
		35조	사회보장 상담 수리	사회보장 상담 수리	3
36조	사회보장 사항 통지	사회보장 사항 통지	3		
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6	노인복지법	4조	보건복지 증진 정책 추진	보건복지 증진 정책의 추진	1
		6조	노인학대예방의 날 지정 및 홍보 등 행사 추진	노인학대예방의 날 지정 및 홍보 등 행사 추진	1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6	노인복지법	7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및 위촉	9
		8조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지원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지원	9
		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일자리 시책추진 노인 봉사 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일자리 시책추진 노인 봉사 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9
		23조의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0
		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9
		25조	생업지원 (사업자 우선선정 및 우선구매 등)	생업지원 (사업자 우선선정 및 우선구매 등)	0
		26조	경로우대 (이용요금 할인 및 할인권유)	경로우대 (이용요금 할인 및 할인권유)	4
		27조	건강진단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건강진단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0
		27조의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0
		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상담·입소 등의 조치	0
		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0
		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2
		33조의 2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의 규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의 규제	9
		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설치 및 설치신고 접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설치 및 설치신고의 접수)	2
		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설치 및 설치신고 접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설치 및 설치신고의 접수)	2
		37조	경로당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경로당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37조의 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 비용보조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 비용보조	2
		37조의 3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전기, 통신, 수도 등)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전기, 통신, 수도 등)	2
		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설치 및 설치신고의 접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설치 및 설치신고의 접수)	2
		39조의 2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수수료 부과·징수)		9
		39조의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운영·지정취소 등)		9
39조의 4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등 접수)		9		
39조의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설치 또는 위탁운영)		2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6	노인복지법	39조의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접수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접수	9
		39조의11	노인복지시설, 노인거소, 고용장소 등에 대한 조사	노인복지시설, 노인거소, 고용장소 등에 대한 조사	9
		39조의4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9
		39조의8	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2
		40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사항 변경, 폐지, 휴지 등의 신고 접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사항 변경, 폐지, 휴지 등의 신고 접수	2
		43조	사업의 정지 또는 폐쇄명령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사업의 정지 또는 폐쇄명령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2
		44조		청문 (제43조 사업의 폐지 명령전)	2
		45조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또는 위탁, 건강진단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또는 위탁, 건강진단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9
		47조	비용의 보조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비용의 보조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2
		50조		심사청구 등 (조정 및 소득·재산 등 자료요청)	9
		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사업의 육성 목적)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사업의 육성 목적)	9
61조의 2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9		
7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실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실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0
		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장기요양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0
		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조사결과서 작성 및 송부)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조사결과서 작성 및 송부)	9
		17조	장기요양인정서(심의원료내용 및 사유통보 요청)	장기요양인정서(심의원료내용 및 사유통보 요청)	9
		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등에 대한 대리	장기요양인정 신청등에 대한 대리	9
		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6
		32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명세의 공단 통보)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명세의 공단 통보)	6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7	노인장기요양 보합법	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명세의 공단통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명세의 공단통보)	6
		36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신고의 수리 및 신고명세, 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 등의 공단 통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신고의 수리 및 신고명세, 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 등의 공단 통보)	6
		36조의 2	시정명령	시정명령	6
		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및 내용의 통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및 내용의 통보)	6
		37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등(과징금의 부과·징수·기록관리)	과징금의 부과 등(과징금의 부과·징수·기록관리)	9
		37조의 3	위반사실 등의 공표(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심의위원회설치·운영)	위반사실 등의 공표(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심의위원회설치·운영)	6
		37조의 5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처분)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처분)	6
		47조의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설치·운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설치·운영)	2
		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위원추천)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위원추천)	9
		53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위원장 위촉)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위원장 위촉)	9
		61조	보고 및 검사(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검사)	보고 및 검사(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검사)	9
		63조	청문(지정취소, 업무정지명령, 폐쇄명령, 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하려는 경우)	청문(지정취소, 업무정지명령, 폐쇄명령, 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하려는 경우)	9
		69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9
8	건강검진 기본법	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종합계획에 따른 국가건강 검진)		5
		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상담·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상담·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5
		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의 의료비지원 등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의 의료비지원 등	5
		26조	비용의 보조(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	비용의 보조(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	5
9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신청의접수,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신청의접수,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3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9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3
		7조	수급자격의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3
		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동의서구득)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동의서구득)	3
		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급여의 제공여부 및 제공유형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급여의 제공여부 및 제공유형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등)	3
		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3
		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3
		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지원대상자의 동의 후, 정보 활용 지원 등)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지원대상자의 동의 후, 정보 활용 지원 등)	3
		14조	민관협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비용지원 등)	민관협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비용지원 등)	3
		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계획수립, 시행 평가, 변경, 수급 자격확인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계획수립, 시행 평가, 변경, 수급 자격확인등)	3
		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사회보장급여의명칭, 선정기준, 보 장내용, 신청방법등안내등, 전화상담 센터설치운영등)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사회보장급여의명칭, 선정기준, 보 장내용, 신청방법등안내등, 전화상담 센터설치운영등)	3
		17조	이의신청(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통지 등)	이의신청(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통지 등)	9
		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상담·금전적지원등)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상담·금전적지원등)	3
		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3
		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신고접수 등)	수급자의 변동신고(신고접수 등)	9
		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변경·중지·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변경·중지·통지 등)	9
		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9
		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등)	3
		28조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조정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조정	3
		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5년초과 정보 보유금지, 5년 내 파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5년초과 정보 보유금지, 5년 내 파기)	9
		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차 별시행계획수립, 보고, 지역사회보장 조사실시등)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차 별시행계획수립, 보고, 지역사회보장 조사실시등)	3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9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3
		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3
		40조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운영·위원우족·조례제정 등)		3
		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설치·운영·위원우족 등)	3
		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설치·운영)	3
		43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육훈련시책수립·시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육훈련시책수립·시행)	9
		44조		복지위원(위원우족 등)	9
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1호~제4호사업·보조기기교부 대여및사후관리등사례관리, 정보제 공, 품질관리, 연구개발지원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1호~제4호사업·보조기기교부 대여및사후관리등사례관리, 정보제 공, 품질관리, 연구개발지원등)	0
		8조	보조기기 교부 등(보조기기 교부대여또는사후관리, 비용지급등)	보조기기 교부 등(보조기기 교부대여또는사후관리, 비용지급등)	4
		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9
		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운영, 경비지원)	지역보조기기센터 (경비지원)	2
		21조	보조기기업체의육성·연구 지원 등	보조기기업체의육성·연구 지원 등	9
		22조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9
11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보완 요구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보완 요구	9
		9조의3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위탁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위탁	0
		10조	소관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소관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11조	노인 등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노인 등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9
11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조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4
		13조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4
		14조	노인 등 편의시설 연구개발 시책 수립	노인 등 편의시설 연구개발 시책 수립	9
		14조의2	노인 등 편의시설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노인 등 편의시설 인식 개선 교육 실시	9
		15조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 시 기준적용 완화 승인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 시 기준적용 완화 승인	4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조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주에 대한 검사 등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주에 대한 검사 등	4
		23조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주에 대한 시정명령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주에 대한 시정명령	4
		24조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4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조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초과 급여 실시 및 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초과 급여 실시 및 통지	3
		9조	조건부 생계급여 실시	조건부 생계급여 실시	3
		15조의3	광역자활센터 지정 등		2
		16조	지역자활센터 지정 등	지역자활센터 지정 등	2
		17조		자활기관협의회 구축	9
		18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9
		18조의2	수급자·차상위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수급자·차상위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수급자·차상위자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0
		18조의3	자활기금 적립	자활기금 적립	9
		18조의4	수급자·차상위자의 자산형성 지원	수급자·차상위자의 자산형성 지원	3
		18조의5	수급자·차상위자의 자활 교육 실시 등	수급자·차상위자의 자활 교육 실시 등	3
		20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9
		21조		수급권자의 급여 작권 신청	3
		22조		급여신청 시 조사 및 검진 실시	3
		23조		수급자 등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수립 등	3
		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3
		25조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조사결과 보고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조사결과 보고	3
		26조		수급권자 조사결과에 따른 급여 여부 결정	3
		28조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급여 실시	3
		29조	수급자의 소득 등 변동에 따른 급여 변경	수급자의 소득 등 변동에 따른 급여 변경	3
		30조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등 중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등 중지	3
31조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및 수급자 조사 기피에 따른 급여 결정 취소 청문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및 수급자 조사 기피에 따른 급여 결정 취소 청문	9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7조	수급자의 거주지역 등 변경 신고 수리	수급자의 거주지역 등 변경 신고 수리	9
		38조	수급자 급여 등 이의신청 수리 및 심사·결과 통지		3
		47조	수급자의 급여 반환명령	수급자의 급여 반환명령	3
13	기초연금법	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신청의접수·수리)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신청의접수·수리)	3
		10조의 2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3
		11조	조사·질문 등(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지급신청각하·지급결정취소· 지급정지결정)	조사·질문 등(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지급신청각하·지급결정취소· 지급정지결정)	0
		13조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결정 및 결정의 통지)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결정 및 결정의 통지)	0
		14조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지급	3
		15조	미지급 기초연금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수리·지급결정 및 통지)	미지급 기초연금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수리·지급결정 및 통지)	3
		16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9
		18조	신고 (신고의접수·수리)	신고 (신고의접수·수리)	9
		19조	기초연금액의 환수	기초연금액의 환수	9
		20조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9
		22조	이의신청(신청의접수)	이의신청(신청의접수)	9
		25조	비용의 부담 (보건복지부장관과 분담비율협의 및 조례제정)	비용의 부담 (보건복지부장관과 분담비율 협의 및 조례제정)	9
31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9		
1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3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발표 등)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3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발표 등)	0
		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비용의 일부지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비용의 일부지원)	9
		12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주거시설 공급지에 대한 지원)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주거시설 공급지에 대한 지원)	2
1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효행장려사업 수행자에 대한 비용보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효행장려사업 수행자에 대한 비용보조)	0
		15조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징수·이의신청접수 등)	9
15	구강보건법	4조의2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시행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시행	1
		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1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15	구강보건법	7조	구강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보건소 내 치과 의사·치과위생사 설치, 구강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9
		8조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시행 결과 제출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 시행 결과 제출	1
		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 수립·시행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 수립·시행	1
		15조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실시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실시	6
		17조의2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6
1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여건조성·재원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여건조성·재원확보)	0
		8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호~제4호의 시행 강구)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호~제4호의 시행 강구)	0
		1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에 따른 조사)	3
		11조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발급여부 결정·통지)	3
		12조		이의신청 (이의신청 조치)	9
		16조		제공자 등록 (등록제한·등록증발급·등록사항직권말소 등)	9
		18조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신고접수)	9
		20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3
		21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9
		23조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9
		24조		청문	9
		25조		과징금처분	9
		29조	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3
		31조	교육과 훈련 (우탁·예산지원)		9
32조	보고 및 검사 등	보고 및 검사 등	9		
40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9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3조	국가 등의 책무 (종합적인책수립·시행)	국가 등의 책무 (종합적인책수립·시행)	1

연번	법률명	조항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분류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1
		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0
		11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0
		12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1호~제3호의 사업추진)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1호~제3호의 사업추진)	0
		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제1호~제5호의 사업추진)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제1호~제5호의 사업추진)	0
		19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2
		25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9
18	건강가정 기본법	5조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	1
		9조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강구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강구	1
		10조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및 활용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및 활용	9
		11조	건강한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정보관리체계 확립	건강한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정보관리체계 확립	9
		16조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등)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등)	1
		18조	계획수립의 협조 (민간에 협조요청)	계획수립의 협조 (민간에 협조요청)	9
		19조	교육연구의 진흥 (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	교육연구의 진흥 (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	9
		20조	가족실태조사 (매5년 조사 및 결과 발표)	가족실태조사 (매5년 조사 및 결과 발표)	9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2항 1호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 및 2호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인정 등)	가정에 대한 지원 (제2항 1호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 및 2호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인정 등)	0
		24조	가족의 건강증진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대책)	가족의 건강증진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대책)	5
		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시책강구 및 보호시설 확대 등)	가족부양의 지원 (시책강구 및 보호시설 확대 등)	0
		26조	가족관계의 증진 (상담, 자원서비스 제공, 폭력에 대한 체계적 개입 등)	가족관계의 증진 (상담, 자원서비스 제공, 폭력에 대한 체계적 개입 등)	0
		30조	가정봉사원 지원 (간병비 등 예산지원)	가정봉사원 지원 (간병비 등 예산지원)	9
		34조의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 (조손가정 등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 (조손가정 등 지원)	9
		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상담·치려 자료제공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상담·치려 자료제공 등)	9















〈표 4〉 노인복지사무 중 기초자치단체 사무 분류

(단위: 빈도)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 실시 및 보고	4	0	29	4	0	29
	긴급전화 센터의 설치 운영 등	긴급구조 지원	4	0	29	4	0	29
		위탁 시 경비지원	4	0	29	4	0	29
	상담소의 설치운영	상담소 설치 운영	4	6	23	4	0	29
		상담소 설치운영 신고 접수	4	0	29	4	0	29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등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보고접수	4	0	29	4	0	29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보호비용 지원	4	0	29	4	0	29
	수사 기관의 협조	관할경찰서의 정에게 그 소속직원의 동행요청	4	0	29	4	0	29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등	현장출동 시 동행	4	0	29	4	0	29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지 시 신고접수	0	0	33	4	0	29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0	0	33	4	0	29
	감독	보고요청, 조사, 서류검사 등	4	0	29	4	0	29
	청문	청문	4	0	29	4	0	29
	치료보호	치료보호의 실시	4	6	23	4	0	29
		치료보호비의 대지급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4	0	29	4	0	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고의무 등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4	0	29	4	0	29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의료기관으로 인도	0	0	33	4	0	29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4	0	29	4	0	29
	임시조치의 청구 등	임시조치의 청구	0	0	33	4	0	29
		임시조치의 청구	0	0	33	4	0	29
		임시조치의 청구	0	0	33	4	0	29
		임시조치 미신청시 사유 보고	0	0	33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집행	0	0	33	4	0	29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작성	0	0	33	4	0	29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임시조치의 신청(청구)	0	0	33	4	0	29
		긴급임시조치 취소	0	0	33	4	0	2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업무 수행 비용의 보조	4	0	29	4	0	29
	인증의 취소	인증취소	4	0	29	4	0	29
		취소사실의 통보	4	0	29	4	0	29
	청문	인증기관 취소 전 청문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4	0	29	4	0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의 허가	4	0	29	4	0	29
건강가정 기본법	가정에 대한 지원	안정된 주거생활지원	4	0	29	8	0	29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4	0	29	8	0	29
		노인단독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 지원	4	0	29	4	0	29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에 의해 가족기능이 저하된 경우의 긴급지원	4	0	29	4	0	29
		지원기간의 연장	4	0	29	4	0	29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4	0	29	4	0	29
	가정봉사원	가사 간병 지원	4	0	29	4	0	29
		가정봉사원 비용지급	4	0	29	4	0	29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이혼의사가 정해진 가족 지원	4	0	29	4	0	29
	건강가정 교육	부모교육	4	0	29	4	0	29
		가족윤리교육	4	0	29	4	0	29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4	0	29	4	0	29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설치	건강가정사 배치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건강가정 기본법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상담 또는 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조치	4	0	29	4	0	29
	조사 연구사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4	0	29	4	0	29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4	0	29	4	0	29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의 종류	도움이 필요한 사람(노인) 등의 신고불이행	4	0	29	4	0	29
고령친화사업 진흥법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지원상당액의 환수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4	0	29	4	0	29
고용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살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의 결정 등록 등	적용대상자 등록신청(접수)	4	0	29	4	0	29
		검진의뢰	4	0	29	4	0	29
		검진결과의 통보(접수)	4	0	29	4	0	29
		대상자결정 후 결과 통지	4	0	29	4	0	29
고용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살립에 관한 법률	신상변동의 신고 등	신상변동의 신고(접수)	4	0	29	4	0	29
		신상변동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4	0	29	4	0	29
	요양지원에 대한보조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보조	4	0	29	4	0	29
	요양지원에 대한보조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4	0	29	4	0	29
	보조금 지급	보조금 교부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4	0	29	4	0	29
공익신탁법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4	0	29	4	0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0	0	33	4	0	29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	0	0	33	4	0	29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4	0	29	4	0	29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 등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작성 보관	4	0	29	4	0	29	
	실태조사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조사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조사	4	6	23	4	0	29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조사	보행환경실태 조사	4	0	29	4	0	29
		보행환경실태 조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조사	0	0	33	4	0	29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	보행환경실태 조사	0	0	33	4	0	29
		기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	0	0	33	4	0	29
		실태조사	관계기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지원요청	4	0	29	4	0	29
	이행강제금	시장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계고	4	0	29	4	0	29
		이행강제금 부과액, 부과사유, 납부기간, 납부방법, 이의제기 방법 등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액, 부과사유, 납부기간, 납부방법, 이의제기 방법 등 통지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4	0	29	4	0	29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배치	4	0	29	4	0	29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평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4	0	29	4	0	29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포함	구강보건사업의 실시	4	0	29	4	0	29
		구강보건사업의 실시	구강보건사업의 실시	0	0	33	4	0	29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 운영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 운영	0	19	14	4	0	29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로지원 등의 위탁	양로지원 비용부담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국민연금법	급여지급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4	0	29	4	0	29	
	급여수급전용계좌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	4	0	29	4	0	29	
	미지급급여	미지급급여 청구	4	0	29	4	0	29	
	급여의 환수	급여의 환수		4	0	29	4	0	29
		환수이자의 가산		4	0	29	4	0	29
		연체금 가산		4	0	29	4	0	29
		수급권 과오납금에서 환수금 총당		4	0	29	4	0	29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환수금 납입고지	4	0	29	4	0	29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환수금 납입독촉	4	0	29	4	0	29	
		환수금 징수 승인	4	3	26	4	0	29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분할연금 지급	4	0	29	4	0	29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지급	4	0	29	4	0	29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4	0	29	4	0	29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연금보험료의 부과	4	0	29	4	0	29		
국민영양 관리법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식생활 행태 조사	4	0	29	4	0	29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4	0	29	4	0	29	
		조사의 정기적 실시	4	0	29	4	0	29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지급 및 지급시기	기초연금지급	4	0	29	4	0	29	
	기초연금액의 환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의 환수	4	0	29	4	0	29	
	기초연금액의 환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의 환수	4	0	29	4	0	29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의 환수	4	0	29	4	0	29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납입고지	4	0	29	4	0	29	
		독촉	0	0	33	4	0	29	
		자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4	0	29	4	0	29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 결정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0	29	4	0	29	
기초연금법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 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4	0	29	4	0	29	
	건강진단 등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	4	0	29	4	0	29	
	건강진단 등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필요한 지도 등)	4	0	29	4	0	29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방문요양서비스 및 보호조치	4	0	29	4	0	29	
	상담입소 등의 조치	상담지도		0	0	33	4	0	29
		상담지도		4	0	29	4	0	29
		입소조치 대상자의 징계		4	0	29	4	0	29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	요양보호사 배치	4	0	29	4	0	29	
	긴급 전화의 설치 등	긴급전화 설치	0	0	33	4	0	29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	노인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4	0	29	4	0	29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0	29	4	0	29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0	0	33	4	0	29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0	0	33	4	0	29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0	0	33	4	0	2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직무 상 신고의무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 접수		0	0	33	4	0	29
		직무 상 신고의무자의 교육과정의 신고의무 관련교육 내용 포함		4	0	29	4	0	29
	응급조치업무 등	현장확인 및 현장확인 동행 요청 등		4	0	29	4	0	29
		조사 질문 등		4	0	29	4	0	29
		피해노인 보호자, 노인학대행위자 신분조회등 협조		4	0	29	4	0	29
	실종 노인에 관한 신고 의무 등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출(접수)		4	0	29	4	0	29
실종노인 발생예방 등 업무 위탁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복지법	조사 등	금지행위(39조의 9)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4	0	29	4	0	29
	노인학대 등의 통보	노인학대 의심사유의 통보	4	0	29	4	0	29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권고	4	0	29	4	0	29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노인학대관련 범죤전력자의 노무제공 여부 점검 확인	4	0	29	4	0	29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위반사황에 대한 조치	4	0	29	4	0	29
		위반사황에 대한 조치 거부 시 처분 및 처분 요구	4	0	29	4	0	2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0	0	33	4	0	29
	비용의 수납 및 청구	입소자 또는 이용자(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외)로부터의 비용 수납 신고(접수)	4	0	29	4	0	29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수납 신고 접수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장수	4	0	29	4	0	29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실태조사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황 조사	4	0	29	4	0	29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황 조사	4	0	29	4	0	29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황 조사	4	0	29	4	0	29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규모 등 조사	4	0	29	4	0	29
	장기요양 보험료의 장수	장기요양보험료 장수	4	0	29	4	0	29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통합장수 및 구분 고지	4	0	29	4	0	29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회계 구분 관리	4	0	29	4	0	29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신청의 접수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장기요양 인정신청의 조사	조사의뢰 또는 공동조사 요청의 접수	4	0	29	4	0	29
		조사일정 및 조사담당자의 통보	4	0	29	4	0	29
		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송부	4	0	29	4	0	29
	장기요양등급판정기 간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 대한 통보	4	0	29	4	0	29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4	0	29	4	0	29
	장기요양 인정서	수급자 제외판정에 대한 내용 및 사유 통보요청	4	0	29	4	0	29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4	0	29	4	0	29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접수)	4	0	29	4	0	29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급	4	0	29	4	0	29
	특례요양비	특례요양비의 지급	4	0	29	4	0	29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4	0	29	4	0	29
	특별한금급여 수급계좌	특별한금급여 수급계좌로의 이체 등	4	0	29	4	0	29
		특별한금급여 수급계좌 입금관리	4	0	29	4	0	29
	장기요양 급여의 제한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금지결정 (자료제출, 보고검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0	29	4	0	29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접수)	4	0	29	4	0	29
	장기요양 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	신고접수 및 공단통보	4	0	29	4	0	29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인쇄 등	장기요양기관별 급여내용, 현황자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0	29	4	0	29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4	0	29	4	0	29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4	0	29	4	0	29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폐업/휴업의 신고(접수) 및 공단에 통보	4	0	29	4	0	29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 시 공단에 내용통보	4	0	29	4	0	29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4	0	29	4	0	29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4	0	29	4	0	29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의 공단통보 도지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4	0	29	4	0	29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4	6	23	4	0	29
	과징금의 부과 등	과징금 (체납)징수	4	0	29	4	0	29
	위반사항 등의 공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공표	4	0	29	4	0	29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제한	4	0	29	4	0	29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내용의 공단 통보	4	0	29	4	0	29
	재가 및 사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접수)	4	0	29	4	0	29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심사 및 지급	4	0	29	4	0	29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액 조정 지급	4	0	29	4	0	29
	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의 징수	4	0	29	4	0	29
		거짓행위 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4	0	29	4	0	29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4	0	29	4	0	29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 및 수급자에게 지급	4	0	29	4	0	29
장기요양요원지원센 터 설치 등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4	10	1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4	0	29	4	0	29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0	29	4	0	29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4	10	19	4	0	29
		수급자에 대한정보제공 등 이용지원	4	0	29	4	0	29
	관리운영기관 등	급여비용의 심사 및 특별한금급여 지급	4	0	29	4	0	2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4	0	29	4	0	29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4	0	29	4	0	29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등	4	0	29	4	0	29
	이의신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4	0	29	4	0	29
		이의신청의 접수	4	0	29	4	0	29
	심사청구	이의신청사건의 심의	4	0	29	4	0	29
		심사청구	4	0	29	4	0	29
	자료의 제출 등	자료제출의 요구	4	0	29	4	0	29
	보고 및 검사	부수, 소득 등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서류검사 등	4	0	29	4	0	29
		장기요양급여 제공 명세 재무회계 자료 제출 명령 및 관계서류 검사	4	0	29	4	0	29
	청문	처분 또는 공표 전 청문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0	0	33	4	0	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고령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실태조사	19	10	4	4	0	29
		조사결과외 보고	23	0	10	4	0	29
	시·도 및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회 설치 운영 필요사항 결정	23	10	0	4	0	29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일부지원	4	3	26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10	19	4	0	29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노인복지시설 등 집단화된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4	0	29	4	0	29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전문지원기관의 경비보조	4	0	29	4	0	29
		전문지원기관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4	0	29	4	0	29
		전문지원기관지정 취소 전 청문	4	0	29	4	0	29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자격유지 적정성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4	0	29	4	0	2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복지시설의 우선지원	사회복지시설 개선사업시 농어촌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재정 지원	4	0	29	4	0	29
	저소득 노인의 요양 지원	간병, 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 서비스 제공	4	0	29	4	0	2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활동	4	3	26	4	0	29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활동	4	3	26	4	0	29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	4	0	29	4	0	29
		노인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4	0	29	4	0	29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4	0	29	4	0	29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활동	4	0	29	4	0	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활동	4	0	29	4	0	29
		대한노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4	10	1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협조 및 지원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편의 제공 및 협조 지원 등	4	0	29	4	0	29
	국유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4	0	29	4	0	29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계약	4	0	29	4	0	29
	비용의 보조 등	활동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등	4	0	29	4	0	29
	예산 등의 보고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보고(접수)	4	10	19	4	0	29
	결산 등의 보고	수입 지출 결산 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 보고(접수)	4	0	29	4	0	29
		공인회계사 지정	4	0	29	4	0	29
	지도 감독 등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	4	0	29	4	0	29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현장 검사		0	0	33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0	0	33	4	0	29	
도로교통법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안전 조치	4	6	23	4	0	29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4	0	29	4	0	29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교육	4	0	29	4	0	29
	교통안전 교육기관의 지정 등	교통안전기관 지정증 발급	4	0	29	4	0	29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기간 5년(65세 미만 10년)	4	0	29	4	0	29
		운전면허 갱신기간 중 적성검사	4	0	29	4	0	29
국고보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비용 보조	4	6	23	4	0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 공원설치	4	6	23	4	0	29
		조성계획 수립 전 도시공원 설치 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4	0	29	4	0	29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서의 행위제한	노인복지시설 입지 등 행위제한의 예외 허가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집적지 구 인프라 구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업장 이용편리를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 보수 등 기본시설 조성 및 확충	4	10	19	4	0	2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양로지원	국가양로시설에서의 양로지원	4	3	26	4	0	29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재기급여 또는 시설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일부 보조	4	3	26	4	0	29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4	0	29	4	0	29
	양로지원 등의 위탁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위탁	4	0	29	4	0	29
		양로지원 비용부담	4	0	29	4	0	29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요양지원 보조금 환수	4	0	29	4	0	29
요양지원 보조금 환수액 징수		4	0	29	4	0	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등	장기요양요원이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사실 신고 접수	4	0	29	4	0	29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	4	0	29	4	0	29
	현장조사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및 현장 동행 요청	4	0	29	4	0	29
		신고접수 후 현장 조사 및 질문 등	4	0	29	4	0	29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의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4	0	29	4	0	29
		발달장애인 격리보호 기간연장 사전승인	4	0	29	4	0	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 격리보호기간 종료 전 시설 입소 의뢰 접수	4	0	29	4	0	29
		보호조치 경비 지원	4	0	29	4	0	29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4	0	29	4	0	29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내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4	0	29	4	0	29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23	10	0	4	0	29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4	10	1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인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노력	4	0	29	4	0	29	
	보행환경개선지역의 지정	노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지역 지정	4	0	29	4	0	29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지역 지정	4	0	29	4	0	29	
		보행환경개선지역 지정의 고시 등	4	0	29	4	0	29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4	0	29	4	0	29	
		보행환경개선사업 비용의 보조	4	0	29	4	0	29	
	보행환경개선지역 지정 해제	보행환경개선지역 지정 해제	4	0	29	4	0	29	
		보행환경개선지역 지정 해제의 고시	4	0	29	4	0	29	
	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보행환경 검토	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노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 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접수)	23	0	10	4	0	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계획 작성 제출(접수)	4	0	29	4	0	29
			협상대상자 지정	4	0	29	4	0	29
			사업시행자 지정	4	0	29	4	0	29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접수)			4	0	29	4	0	29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0	29	4	0	29	
		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0	29	4	0	29	
보고 검사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접수) 등	4	0	29	4	0	29	
재정지원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장기대부	4	0	29	4	0	29	
부담금 등의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4	0	29	4	0	29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감면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4	0	29	4	0	29
		보장기관 업무담당자의 직업 신청	4	0	29	4	0	29
		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고지	4	0	29	4	0	29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 조사	4	0	29	4	0	29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4	0	29	4	0	29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 조사	4	0	29	4	0	29
	수급자격의 조사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조사	4	0	29	4	0	29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 조사	4	0	29	4	0	29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조사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수급자격의 조사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4	0	29	4	0	29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4	0	29	4	0	29
		거주지 등 현장조사	4	0	29	4	0	29
		관련전산망 이용을 위한 협조요청	4	0	29	4	0	29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구득	4	0	29	4	0	29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 제공요청	4	0	29	4	0	29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4	6	23	4	0	29
		사회보장급여 제공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4	0	29	4	0	29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등 통지	4	0	29	4	0	29
	정보공유 등 협조요청	정보공유 등 협조요청	4	0	29	4	0	29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4	0	29	4	0	29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사회보장급여 수요자 신고 접수	4	0	29	4	0	29
		직무 상 신고의무 이행 접수	4	0	29	4	0	29
		신고 된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4	0	29	4	0	29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각지대 발굴 기관 등 포함 운영	4	6	23	4	0	29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 비용 지원	4	0	29	4	0	29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계획 수립 이행 등 을 위한 교육 컨설팅 위탁	4	10	1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수급권자 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4	0	29	4	0	29
		수급권자에 대한 다른 기관의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제공 의뢰	4	0	29	4	0	29
		전화상담센터 등 설치 운영	4	0	29	4	0	29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0	29	4	0	29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4	0	29	4	0	29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수급권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금전적 지원 등	4	0	29	4	0	29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수급자격 적정성 조사	4	0	29	4	0	29
	수급자의 변동신고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등 변동 신고	4	0	29	4	0	29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	4	3	26	4	0	29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의 통지	4	0	29	4	0	29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부정수급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4	0	29	4	0	29
		반환명령(또는 반환명령 면제)	4	0	29	4	0	29
		반환금 통지 및 징수	4	0	29	4	0	29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등	23	0	10	4	0	29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변경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4	10	19	4	0	29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을 위한 인력, 기술 재정 등 지원	4	0	29	4	0	29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변경	23	0	10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운영	4	10	19	4	0	29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심의 자문	4	0	29	4	0	29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심의 자문	4	0	29	4	0	29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심의 자문	4	0	29	4	0	29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심의 자문	4	0	29	4	0	29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 자문	4	10	19	4	0	29	
		기타 심의 자문	4	0	29	4	0	29	
		위원 임명 또는 위촉	4	0	29	4	0	29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설치	4	0	29	4	0	2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	4	10	19	4	0	2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 결정	4	6	23	4	0	29	
	복지위원	복지위원의 위촉	4	0	29	4	0	29	
		복지위원 수당지급	4	0	29	4	0	29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 결정	19	0	14	4	0	29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 전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 센터 설치 운영	19	6	8	4	0	29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 센터 위탁	19	0	14	4	0	29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결정	19	0	14	4	0	29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선정 지원	19	0	14	4	0	29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선정 지원 등에 관한사항 결정	19	10	4	4	0	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고발 및 징계요구	법위반 범죄혐의자 수사기관에 고발	4	0	29	4	0	29
			범 위헌행위자의 징계요구(기관징계에 요구)	4	0	29	4	0	29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징계요구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 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19	10	4	4	0	29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19	10	4	4	0	29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	19	10	4	4	0	2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19	0	14	4	0	2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설치	19	0	14	4	0	2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19	6	8	4	0	29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4	0	29	4	0	29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3	0	10	4	0	29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위한 대책의 개발	33	0	0	4	0	29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0	29	4	0	29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위탁	4	0	29	4	0	29	
		지도 훈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교육 훈련	4	0	29	4	0	29
	시설의 안전점검	시설의 수시안전점검 결과의 제출(접수)	4	0	29	4	0	29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 보수 요구	4	0	29	4	0	29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 보수비용 보조	4	0	29	4	0	29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4	29	0	4	0	29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사업에 관한사항 결정	4	29	0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4	0	29	4	0	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상담 교육	노인복지시설의 자살예방 상담 교육 실시	4	0	29	4	0	29
			자살예방 상담교육 비용지원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교부 등	보조기기 신청 접수	4	0	29	4	0	29
		보조기기 교부 대여 또는 사후관리	4	0	29	4	0	29
		보조기기 교부 대여 또는 사후관리 비용 지급	4	0	29	4	0	29
		보조기기 서비스 에 대한 사례관리	4	0	29	4	0	29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4	29	0	23	0	29
	지역보조기기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운영	4	0	29	4	0	29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지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4	0	29	4	0	29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0	29	4	0	29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0	29	4	0	29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4	0	29	4	0	29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4	0	29	4	0	29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4	0	29	4	0	2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0	29	4	0	29
		시군구에 지역센터 설치 운영	0	0	33	4	0	29
		지역센터의 운영 위탁	4	0	29	4	0	29
		지역센터 위탁운영 경비 지원	4	0	29	4	0	29
		전문인력 배치	4	0	29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설치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제출	23	10	0	4	0	29	
	시장명령 등	대상시설 시설주에게 관리보수 개선 등 조치 명령	4	0	29	4	0	29	
	이행강제금	시장명령 불이행 시설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4	0	29	4	0	29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4	0	29	4	0	29
		이행강제금 징수		4	0	29	4	0	29
		채납처분		4	0	29	4	0	29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4	0	19	4	0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빈 점포의 활용 촉진	노인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10	19	4	0	29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0	29	4	0	29	
	빈 점포의 활용 촉진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대한 비용지원	4	0	29	4	0	2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예산 지원	4	0	29	4	0	29
치매관리법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 수검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4	0	29	4	0	29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 치료 및 진단비용 지원	4	0	29	4	0	29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4	0	29	4	0	29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0	29	4	0	29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4	0	29	4	0	29
		그 밖에 치매 관련 업무		4	0	29	4	0	29
		업무위탁		0	0	33	4	0	29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및 업무위탁 사항 결정		23	10	0	4	0	29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치매관리법	치매상담 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4	0	29	4	0	29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4	0	29	4	0	29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0	29	4	0	29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4	0	29	4	0	29
		치매조기검진	4	0	29	4	0	2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4	0	29	4	0	29
	치매상담 전화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전화 센터의 설치 운영	19	10	4	4	0	29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4	0	29	4	0	29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4	0	29	4	0	29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0	29	4	0	29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4	0	29	4	0	29
		그 밖에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4	0	29	4	0	29
		업무 위탁	4	0	29	4	0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노인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	4	0	29	4	0
처우		전담교정시설에의 수용	4	0	29	4	0	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	4	0	29	4	0	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보호	구상청구	8	0	25	8	0	25
건강가정 기본법	가정에 대한 지원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8	0	25	8	0	25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0	25	8	0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우선 구역의 지정	자정계획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주민의견 청취 후 지정 및 확정 고시	8	0	25	8	0	25
국민영양 관리법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영양상태 조사	4	0	29	4	0	2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운영 등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4	0	29	4	0	2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주주관청에 제안서 제출(접수)	4	0	29	14	0	19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통지 및 공고	4	0	29	14	0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접수	4	0	29	14	0	19
		이의신청의 처리 및 통지	4	0	29	14	0	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4	0	29	14	0	19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매 4년)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3	0	0	14	0	19

〈표 5〉 노인복지사무 중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이 모호한 사무

(단위: 빈도)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공무원배치	12	3	18	12	6	15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14	10	9	14	4	15
	긴급전화 센터의 설치 운영 등	관련기관 시설과의 연계	4	19	10	14	9	10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행위허가 제한기간의 연장	14	19	0	14	19	0
		행위허가 제한 통보	14	13	6	14	16	3
		행위허가 제한 보고	14	13	6	14	16	3
	주민지원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14	10	9	14	7	12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4	19	10	14	9	10
	비용의 부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4	19	10	14	9	10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관리운영기관 등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4	0	29	14	9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주주관청에 제안서 제출(접수)	4	0	29	14	0	19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통지 및 공고	4	0	29	14	0	19
		제안서 검토 평가 후 협상대상자 지정	4	0	29	14	9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접수	4	0	29	14	0	19
		이의신청의 처리 및 통지	4	0	29	14	0	19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4	0	29	14	0	19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매 4년)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3	0	0	14	0	19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부금의 상환기간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15	8	10	15	18	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예산조치	18	0	15	18	0	1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록 및 결정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	19	10	4	19	14	0
	이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의 통보접수	19	0	14	19	7	7
	교육지원 신청	교육지원 실시 결정	19	10	4	19	11	3
	조사 질문 등	교육지원 대상 자격확인	19	0	14	19	4	10
	직업훈련	추천할 취업대상자 수 결정	15	8	10	19	14	0
	능력개발장려금의 지급 등	비용지원, 장려금 지급	19	0	14	19	7	7
	대부의 한도액	한도액 결정	19	0	14	19	7	7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 이율 결정	19	10	4	19	11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19	10	4	19	10	4
	간급전화 센터의 설치 운영 등	간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19	6	8	19	0	14
	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등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19	10	4	19	10	4
		협조 및 지원 요청의 접수	15	4	14	19	4	10
건강검진 기본법	조사 연구사업 등	건강검진의 홍보	19	0	14	19	0	14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의 승인	수익사업에 대한 (변경)승인	4	10	19	19	10	4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수익사업 승인 취소	4	0	29	19	10	4
	청문	수익사업승인취소 처분 전 청문	4	10	19	19	10	4
	조직	지부나 지회 설치 요청	4	10	19	19	10	4
	이사회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 대행 승인	4	10	19	19	10	4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고엽제 전우회의 회계 조사 등 검사	4	0	29	19	0	14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 요구	4	0	29	19	0	14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수당 등의 환수	진료비용 환수	4	0	29	19	0	14
		수당의 환수	4	0	29	19	0	14
		학습보조비 환수	4	0	29	19	0	14
		직업재활훈련비 등 환수	4	0	29	19	0	14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환수	4	0	29	19	0	14
		결손처분	4	0	29	19	0	14
국민건강 증진법	수수료	건강증진사업 소요경비 중일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서의 수수료 감면	4	10	19	19	10	4
국민연금법	노령연금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 지급	8	0	25	19	3	7
노인복지법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19	0	14	19	0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3	6	4	23	3	7
		피해자 신변보호출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	23	10	0	23	10	0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 등의 필요한 사항 결정	23	10	0	23	10	0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위탁	23	10	0	23	4	6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	19	10	4	23	4	6
		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공표	23	10	0	23	4	6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결정	23	10	0	23	10	0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위탁	23	4	6	23	4	6
		교재, 자료, 전문 인력 지원	23	4	6	23	10	0
	상담소의 설치운영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신고절차 등	26	3	4	23	0	10
	보호시설의 설치	보호시설 설치운영기준, 인가기준 등 결정	23	10	0	23	10	0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결정	23	10	0	23	10	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23	10	0	23	7	3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설치기준, 운영기준, 신고절차 등 결정	23	10	0	23	10	0
	보수교육의 실시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내용 등 결정	23	0	10	23	0	10
	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결정	23	6	4	23	0	10
	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등	홍보영상 송출요청	23	0	10	23	0	10
	인가의 취소 등	업무의 정지 폐지 시설의 폐쇄 인가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23	0	10	23	3	7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운영실적 평가	23	6	4	23	0	10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결정	23	0	10	23	3	7
	치료보호	비용지급 및 구상권행사 절차 결정	23	6	4	23	0	10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19	0	14	23	3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가정폭력범죄 수사 및 검사에게 송치	19	0	14	23	0	10
	이행실태의 조사	이행실태조사	19	10	4	23	10	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29	4	0	23	10	0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결정	23	10	0	23	10	0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행계획 수립	23	10	0	23	10	0
		추진실적 평가	23	10	0	23	7	3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결정	23	6	4	23	0	10
	계획수립의 협조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23	0	10	23	0	10
		요청받은 자료 제출	19	0	14	23	0	10
	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23	0	10	23	0	10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	23	0	10	23	0	10
		실태조사의 방법 등 결정	23	6	4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사업평가	23	10	0	23	10	0
		평가 대상 및 방법 결정	23	10	0	23	10	0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3	0	10	23	0	10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23	0	10	23	0	10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실시 및 강사양성	19	6	8	23	0	10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3	6	4	23	6	4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23	0	10	23	0	10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사항	23	0	10	23	0	10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3	6	4	23	6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3	0	10	23	3	7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 보급	23	0	10	23	0	10
		가족친화 시설 조성지원	23	0	10	23	0	10
		지역사회 가족돌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23	0	10	23	0	10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23	6	4	23	0	10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가족친화 마을환경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23	0	10	23	0	10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지원	23	0	10	23	0	10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결정	29	4	0	23	10	0
		비용지원 기준 및 절차 결정	23	10	0	23	10	0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가족친화지수 개발 보급	23	10	0	23	10	0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결과 공표	23	10	0	23	7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가족친화인증	23	10	0	23	7	3
		인증신청(접수)	23	4	6	23	7	3
		심사평가 비용 부과	23	4	6	23	7	3
		인증기준 및 절차 결정	23	10	0	23	10	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기관 지정	23	10	0	23	10	0
		인증기관 지정 기준 절차 인증업무의 범위 결정	23	6	4	23	3	7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23	0	10	23	3	7
	인증의 시후관리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 조사	23	0	10	23	0	10
	가족친화센터의 지정 등	가족친화센터의 지정	23	10	0	23	10	0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절차 등 결정	23	3	7	23	3	7
	보고 및 검사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사항에 대한 보고 및 검사	23	0	10	23	0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한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결정	23	0	10	23	0	10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시군구청장의 행위 허가 제한	23	10	0	23	10	0
	주민지원사업 등	비용지원	23	4	6	23	10	0
간강가정 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양성평등 가족지원 실현 및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23	10	0	23	10	0
	정보제공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체계 확립	23	6	4	23	3	7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3	10	0	23	10	0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결정	23	10	0	23	10	0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시행계획 조정 및 이행사항 점검	23	10	0	23	10	0
		시행계획 변경요구	23	10	0	23	10	0
	계획수립의 협조	협조요청	23	4	6	23	7	3
	교육연구의 진흥	연구진흥 및 전문가 양성	23	10	0	23	10	0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23	10	0	23	10	0
	가족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23	0	10	23	0	10
		가족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결정	23	10	0	23	4	6
	가정에 대한 지원	가장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23	0	10	23	0	10
		그 밖의 관련사항	23	0	10	23	0	10
	위기가족 긴급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결정	23	6	4	23	3	7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건강가정 기본법	위기가족 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비용지원	23	0	10	23	0	10
	가족단위 복지증진	사회보장제도의 운용 등 가족을 지지하는 정책 개발 추진	23	0	10	23	6	4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가족 우대방안 강구	23	0	10	23	6	4
	가족의 건강증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 건강증진 대책 마련	23	0	10	23	0	10
	가족부양의 지원	정책마련	23	6	4	23	0	10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 지원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이혼조정 내실화 조치 강구	23	0	10	23	0	10
	건강가정 교육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 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	23	6	4	23	6	4
		경비출연	23	0	10	23	0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23	0	10	23	0	10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 직무등 결정	23	0	10	23	0	10
		민간위탁	23	0	10	23	0	10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국가건강검진 위원회 설치	23	10	0	23	10	0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 위촉	23	4	6	23	10	0
		전문위원회 설치	23	4	6	23	10	0
		위원회 구성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19	10	0	23	10	0
	건강검진종합계획	종합계획 수립	23	10	0	23	10	0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설치 운영	23	10	0	23	10	0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23	10	0	23	10	0
	검진기관의 지정	검진기관 지정	23	10	0	23	10	0
		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결정	23	10	0	23	10	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건강검진 기본법	검진기관의 평가	인력 시설 및 장비	23	10	0	23	10	0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23	10	0	23	10	0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 범위 방법 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의 결정	23	10	0	23	10	0
		평가결과의 공개	23	10	0	23	10	0
		우수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23	4	6	23	10	0
		검진기관 평가 위탁	23	4	6	23	10	0
	검진자료의 활용	통계생산 발표	23	4	6	23	7	3
		개인정보보호	23	4	6	23	7	3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23	6	4	23	0	10
	조사 연구사업 등	성·연령별 건강검진 자 참가발	23	6	4	23	0	10
		건강검진 질 관리 및 평가	23	0	10	23	0	10
		건강검진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23	0	10	23	6	4
		그 밖의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	23	0	10	23	0	10
		예산지원	23	10	0	23	10	0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 지급 등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의 결정 및 고시	23	10	0	23	10	0
	자료의 협조요청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요청	23	4	6	23	4	6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의 결정 및 고시	23	10	0	23	10	0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확진을 위한 검시 비, 의료비 등 지원	23	0	10	23	0	10
		의료비 지급 대상 기준 및 방법의 결정	23	0	10	23	0	10
비용의 보조	국가건강검진 시행 법인 및 단체에 비용지원	23	6	4	23	6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법률적용의 예외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고령친화사업 진흥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수립 시행	29	0	4	23	6	4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홍보교육 및 연구	23	10	0	23	10	0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23	10	0	23	10	0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23	10	0	23	4	6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23	10	0	23	10	0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그 밖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23	10	0	23	4	6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	23	10	0	23	10	0
		전문인력 양성기관(고령친화관련기관) 지정	23	10	0	23	10	0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시책 마련	23	10	0	23	10	0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지원	23	10	0	23	10	0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보급	23	10	0	23	10	0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 및 개발	23	10	0	23	10	0
		그 밖의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시행	23	4	6	23	10	0
		고령친화관련기관에 경비지원	23	10	0	23	4	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국제동행피막 및 국제협력 촉진	23	10	0	23	10	0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23	10	0	23	10	0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정	센터 설립 지정	23	10	0	23	10	0
		예산지원	23	10	0	23	4	6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지정 운영에 관한사항 결정	23	10	0	23	10	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고령친화사업 진흥법	금융지원등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책 실시	23	4	6	23	10	0
	우수제품 등의 지정 표시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23	4	6	23	7	3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위탁	23	10	0	23	7	3
	우수제품 등의 지정 표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절차 표시방법 결정	23	10	0	23	7	3
	우수제품 등의 지정 취소	지정취소	23	10	0	23	7	3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기술개발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23	10	0	23	10	0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23	10	0	23	10	0
		연구시설및 장비의 이용지원	23	0	10	23	0	10
		그 밖의 지원	23	0	10	23	0	10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결정	23	10	0	23	10	0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살림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의 결정 등록 등	등록부 등록	4	0	29	23	0	10
	양로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	4	10	19	23	10	0
	요양지원에 대한보조	보조금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 지급액 등 결정	23	0	10	23	0	10
	법인격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설치	8	25	0	23	10	0
	반환의무의 면제	면제의 범위 결정	23	0	10	23	0	10
	지원의 정지	3년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의 정지	8	0	25	23	0	10
		실형의 기간동안의 수당지원 정지	8	0	25	23	0	10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지원 영구정지)	8	0	25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익신탁법	공익신탁의 인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수자에 대한 인가	4	10	19	23	10	0
		인가신청	4	10	19	23	10	0
	인가요건	공익신탁 인가	4	10	19	23	10	0
	인가절차	인가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4	10	19	23	10	0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결정	23	10	0	23	10	0
	인가조건	조건부 인가	4	10	19	23	10	0
		인가조건외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	4	10	19	23	10	0
	변경인가	변경인가	4	10	19	23	10	0
		변경인가 신청	4	10	19	23	4	6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 절차 등의 결정	23	10	0	23	10	0
	변경신고	공익신탁 명칭 등 변경 시 신고	4	4	25	23	10	0
		변경신고서 제출	4	10	19	23	4	6
	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공익신탁 인가 시 변경등기 촉탁	4	10	19	23	4	6
	공익신탁의 공시	공시	4	10	19	23	10	0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의 결정	23	10	0	23	10	0
	신탁재산의 운용	신탁재산 사용기간의 연장 승인	4	10	19	23	10	0
		신탁재산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승인	4	10	19	23	10	0
	운용소득의 사용	운용소득 산정방법 결정	23	0	10	23	0	10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접수)	0	0	33	23	0	1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접수)	0	0	33	23	0	10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수탁자와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의 법령위반행위 보고	4	0	29	23	0	10
	합병인가	공익신탁 합병 인가	4	0	29	23	0	10
		합병인가 신청서 제출(접수)	0	0	33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공익신탁법	합병인가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 및 합병인가 심사 방법 및 절차 등 결정	23	6	4	23	0	10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인가의 경우, 등기촉탁	4	0	29	23	0	10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공익신탁 인가 취소	4	0	29	23	0	10
		처분 전 시정 또는 보완 요청	4	0	29	23	0	10
		처분 전 청문	4	0	29	23	0	10
		인가취소 후 명칭변경 등기촉탁	4	0	29	23	0	10
	공익신탁의 종료	종료 신고 접수 및 승인	4	0	29	23	0	10
		청산종결 등기 촉탁	4	0	29	23	0	10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보관수탁관리인 지정	23	0	10	23	0	10
	감사 등	업무보고서 제출, 회계 감사 등	4	25	4	23	0	10
		참고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	4	19	10	23	0	10
	자료제출 등 요청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시정요청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4	0	29	23	0	10
	신탁법 상의 권한	수탁자 해임 직권 행사	4	19	10	23	0	10
		수탁자 선임 직권 행사	4	0	29	23	0	10
조세감면 등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참세 감면	4	0	29	23	6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 설치	4	19	10	23	0	10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자식의 보급 등	예산지원	23	6	4	23	0	10
		교육시설 설치 기준 방법 등 결정	23	0	10	23	0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랑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자랑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23	10	0	23	10	0
		자랑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확정	23	10	0	23	10	0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자랑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23	10	0	23	7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필요한 사항 결정	23	10	0	23	7	3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결정	23	10	0	23	7	3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결정	23	10	0	23	7	3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부합심사	4	10	19	23	4	6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위탁	8	0	25	23	0	10
		교육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노선버스의 이용보장 등	저상버스 도입 재정지원	8	10	15	23	10	0
	도시철도의 이용보장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 결정	23	10	0	23	7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이동지원센터 설치	23	10	0	23	7	3
		이동지원센터 통합 또는 별도 설치	23	10	0	23	7	3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8	0	25	23	0	10
		교통약자의 범위, 차량의 종류, 탑승살비의 기준 등 결정	23	0	10	23	0	10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23	0	10	23	0	10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교통이용정보체제 구축 등 지원	4	0	29	23	0	10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의 결정	23	0	10	23	0	10
	교통수단 등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시	4	0	29	23	0	10
		인증기관의 지정	23	10	0	23	10	0
		인증기준 절차, 인증기관지정 및 인증제도 실시에 고나한 사항 결정	23	10	0	23	10	0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	23	6	4	23	0	10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절차 등 결정	23	6	4	23	0	10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보행우선구역 지정해제 변경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의 결정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실태조사	실태조사 시기·방법 등 결정	23	6	4	23	0	10
	연구개발의 촉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3	6	4	23	0	10
	연구개발의 촉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에게 연구개발결과의 보급	23	0	10	23	0	10
	장애인등의 자기유전 지원 등	장애인이나 고령자 대상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시책 마련	23	10	0	23	4	6
	보고 검사 등	제출받은 자료의 공유	4	4	25	23	4	6
		검사 등	4	10	19	23	4	6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이행강제금 금액 등 결정	23	0	10	23	0	10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	23	10	0	23	10	0
		세부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 기준 결정	23	0	10	23	0	10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평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4	6	23	23	0	10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평가	평가방법 및 절차의 결정	23	0	10	23	0	1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액 결정 등	23	10	0	23	10	0
	양로지원 등의 위탁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위탁	8	0	25	23	0	10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업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8	0	25	23	0	10
국민 건강보험법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상당예산지원	8	3	22	23	3	7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급지원	8	3	22	23	3	7
국민건강 증진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을 기초로 한 실행계획의 수립	23	10	0	23	10	0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8	10	15	23	10	0
	계획수립의 협조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8	10	15	23	10	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 위원회	위원회 설치	8	25	0	23	10	0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8	25	0	23	10	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국민건강 증진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급	8	10	15	23	10	0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6	7	0	23	10	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26	0	7	23	6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결정	26	0	7	23	6	4	
국민연금법	노후준비 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0	0	33	23	0	10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23	0	10	23	0	10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23	0	10	23	0	10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 관리	23	0	10	23	0	10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23	0	10	23	0	10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4	0	29	23	0	10	
	업무위탁	공단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결정	23	0	10	23	0	10	
	급여지급	연금액 산정	23	0	10	23	6	4	
	연금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지급 정지사유 발생 시 사유의 소멸 시 까지 지급정지	4	0	29	23	0	10	
	급여수급전용계좌	급여수급전용계좌 지정 신청 방법, 절차 및 수급전용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23	6	4	23	6	4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	지급연기 신청에 따른 지급연기	지급연기 신청에 따른 지급연기	8	0	25	23	3	7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지급액 조정	8	0	25	23	3	7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분할연금 청구(접수)	8	0	25	23	3	7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분할연금 등 신고(접수)	분할비율 등 신고(접수)	8	0	25	23	0	10
			분할연금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의 결정	23	6	4	23	6	4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분할연금 신청구 및 신청구 취소	4	0	29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분할연금 신청구 및 신청구 취소방법 절차 등에 대한 결정	23	0	10	23	0	10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신청	4	0	29	23	0	10	
	초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초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4	0	29	23	0	10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	23	0	10	23	0	10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55세까지 지급 정지	4	0	29	23	0	10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액수 결정	23	0	10	23	0	10	
	시망일시금	시망일시금 지급 방법의 결정	23	0	10	23	0	10	
	국고부담	국민연금사업 관리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매년)	4	10	19	23	10	0	
	연금보험료의 부과장수 등	연금보험료 장수 위탁	23	0	10	23	0	10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보지사업 및 대여사업	23	10	0	23	10	0
			기금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3	10	0	23	10	0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3	10	0	23	10	0	
회계처리			23	4	6	23	10	0	
공단에 위탁			23	4	6	23	10	0	
국민영양 관리법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절차 통보방법 등의 결정	23	10	0	23	10	0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평가	23	10	0	23	10	0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23	10	0	23	10	0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3	10	0	23	10	0	
	통계 정보	통계 및 정보 수집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4	0	29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국민영양 관리법	영양문제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결정	23	0	10	23	0	10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및 보급	23	6	4	23	0	10
		생애주기별 특성 고려한 식생활 지침 제정 및 보급	23	0	10	23	0	10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등 세부적 사항의 결정	23	6	4	23	0	10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소득기준액의 기준, 고시시기 및 적용기간의 결정	23	0	10	23	0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 마련	23	10	0	23	10	0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및 기준연금액 조정	23	10	0	23	10	0
		노인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요소 전망 실시	23	10	0	23	10	0
		조정된 기준연금액 고시	23	10	0	23	10	0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기초연금액 조정 재정요소전망 및 노인빈곤 실태조사, 기준연금액 고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23	10	0	23	10	0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기초연금 지급 신청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 제공등의 방법의 결정	23	10	0	23	4	6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의 정보제공	23	0	10	23	0	10
		정보제공의 내용 절차 방법 등의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조사 질문 등	기초연금 수급권발생 변경상실 등 확인	23	0	10	23	0	10
		자료 또는 정보제공 등의 요청	23	0	10	23	0	10
		기초연금 지급결정의 취소 또는 지급 정지	23	0	10	23	0	10
조사질문의 범위 절차 시기 내용 방법 등의 결정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기초연금법	금융정보 등의 제공	금융정보 제공 요청	23	0	10	23	0	10
		금융정보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 결정	23	0	10	23	0	10
		기초연금 수급권 결정사항의 통지	23	0	10	23	0	10
		기초연금 발생 변경 상실 등의 결정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결정	23	0	10	23	0	10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	기초연금의 지급 방법 절차 등 결정	23	6	4	23	6	4
	미지급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시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접수 및 지급 여부 결정, 통지	23	6	4	23	0	10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절차 방법 및 부양의무자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결정	23	6	4	23	0	10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발생시 지급 정지	23	0	10	23	0	10
		지급 정지의 절차 등 결정	23	6	4	23	0	10
	신고	지급정지 사유 소멸 신고	23	0	10	23	0	10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발생 신고	23	0	10	23	0	10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의 변동 신고	23	0	10	23	0	10
		기초연금 수급자의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신고	23	0	10	23	0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유 발생에 관한 신고	23	0	10	23	0	10
		신고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결정	23	6	4	23	0	10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 결정	23	6	4	23	0	10
	비용의 부담	국가의 (40%~90%)비용분담	23	0	10	23	0	10
		시도와 시군구의 비용분담 결정	23	6	4	23	0	0
	기초연금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3	10	0	23	10	0
		사회복지사업 정보시스템과 연계	23	10	0	23	10	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복지법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정책 강구 및 추진	23	10	0	23	10	0
	노인실태조사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23	3	7	23	0	10
		자료제출 요구	23	0	10	23	0	10
		조사방법과 내용 등의 결정	23	0	10	23	0	10
	노인의 날 등	노인학대예방의 날 지정, 행사 및 홍보	23	0	10	23	0	10
	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23	10	0	23	10	0
		홍보영상 송출 요청	23	10	0	23	10	0
		홍보영상 송출 요청	23	0	10	23	0	10
		독자적 홍보영상 제작 송출의 협조 및 지원	23	0	10	23	0	10
	노인복지상담원	임용,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노인전문주거시설	주거시설 공급자에 대한 지원	23	0	10	23	0	10
	노인사회참여지원	시책강구 및 노인근로 우선제공 노력 등	23	0	10	23	0	10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23	0	10	23	0	10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	23	0	10	23	0	10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결정	23	6	4	23	6	4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결정	23	0	10	23	6	4
	경로우대	노인이용요금 할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	4	0	29	23	0	10
	상담입소등의 조치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4	0	29	23	0	10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4	0	29	23	0	10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4	0	29	23	0	10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4	0	29	23	0	10
노인재활요양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실시	4	6	23	23	0	10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사항 결정	23	6	4	23	6	4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절차, 비용 및 임대등에 관한 사항 결정	23	6	4	23	6	4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설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설치신고 등 결정	23	0	10	23	0	10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규모수 및 건축면적 제한	23	0	10	23	0	10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민간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의 시설위탁운영 확인	23	0	10	23	0	10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비용 절차 및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설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 설치신고, 설치허가 기준등 결정	23	10	0	23	10	0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 결정	23	6	4	23	6	4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설치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23	0	10	23	6	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 설치 신고 기준 등 결정	23	6	4	23	0	10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 보조	4	0	29	23	0	10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4	0	29	23	0	10
		수도요금 감면	4	0	29	23	0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결정	23	0	10	23	0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비용부담 이용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신고기준 등 결정	23	0	10	23	0	10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23	0	10	23	6	4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23	0	10	23	0	10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응시 및 자격증 교부 수수료 징수	4	0	29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 사항 결정	23	6	4	23	0	1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	23	0	10	23	6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업정지명령)	23	0	10	23	0	10
		청문(처분전 청문)	4	0	29	23	0	1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행정처부 기준 및 절차 결정	23	0	10	23	6	4
	간급전화의 설치 등	간급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결정	23	6	4	23	6	4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3	3	7	23	3	7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3	0	10	23	0	10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23	0	10	23	0	10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23	0	10	23	0	10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23	6	4	23	6	4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3	6	4	23	6	4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4	0	29	23	0	10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4	0	29	23	0	10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3	6	4	23	6	4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0	0	33	23	0	10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기준 및 상담원 자격 배치기준,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등 결정		23	0	10	23	6	4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학대 신고 접수	0	0	33	23	0	10
		신고의무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의 결정	23	0	10	23	0	10
	응급조치업무 등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4	0	29	23	0	10
		신분조회 요청 절차 범위 등 결정	23	6	4	23	0	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연구	4	0	29	23	0	10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4	0	29	23	0	10
		그 밖의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	4	0	29	23	0	10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3	0	10	23	0	10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구를 위한 사항	23	0	10	23	0	10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4	6	19	23	0	10
		청문(처분 전 청문)	4	0	29	23	0	10
		자격취소 절차 등의 결정	23	0	10	23	0	10
	노인학대 등의 통보	피해노인 보호조치	4	0	29	23	0	10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조사 요청	0	0	33	23	0	10
		노인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조사 요청	0	0	33	23	0	10
		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요청 절차 범위 등 결정	23	6	4	23	0	10
	위반사실의 공표	39조의 9(금지행위) 위반사실로 처벌받은 사실 공표	4	0	29	23	0	10
		처분 또는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표	4	0	29	23	0	10
		공표 전 공표사실의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4	0	29	23	0	10
		공표 절차 방법 등 결정	4	0	29	23	6	4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복지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의료비 지원	0	0	33	23	0	10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0	29	23	0	10
		쉼터 운영 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	4	0	29	23	0	10
		위탁운영, 위탁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결정	23	6	4	23	6	4
		쉼터 설치기준 운영 및 인력, 입소, 이용대상 기간 및 절차 등 결정	23	6	4	23	6	4
	사업의 정지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	4	0	29	23	0	10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	4	0	29	23	0	10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	4	0	29	23	0	10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결정	23	0	10	23	0	10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비용의 부담	4	0	29	23	0	10
		건강진단 등과 상담 입소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4	6	23	23	0	10
	비용의 수납 및 청구	부담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	23	6	4	23	0	10
	비용의 보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 보조	4	0	29	23	0	10
	조세감면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토지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 감면	4	0	29	23	0	10
	노인복지영역 지도원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 결정	23	0	10	23	0	10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의 실시	14	0	19	23	6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비용 지원			4	0	29	23	6	4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사책강구	4	10	19	23	6	4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본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수립	23	10	0	23	6	4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23	0	10	23	0	10
	실태조사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23	0	10	23	0	10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3	0	10	23	6	4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의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23	6	4	23	0	10
	장애인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대통령령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23	0	10	23	0	10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발급자의 범위 등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방법 등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결정	23	0	10	23	0	10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 신청(접수)	4	0	29	23	6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대리자 지정	4	0	29	23	0	10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결정	23	0	10	23	6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 종류,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업무, 보수교육 등 사항 결정	23	0	10	23	6	4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 결정	23	0	10	23	6	4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지역 결정	23	0	10	23	0	10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급여 인정 기관, 시설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 결정	23	0	10	23	0	10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간병비 지급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결정	23	0	10	23	0	10	
	특별한금급여 수급계좌	특별한금수급계좌에 관리에 관한 사항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금지 결정(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3	0	10	23	0	10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시설 인력 기준 등의 결정	23	0	10	23	6	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결정	23	3	7	23	3	7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게시내용, 방법,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6	4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명세서, 기록물의 내용 및 보존기한 등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기준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기준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이용자 조치계획 수립 등		23	6	4	23	0	10
		이용자권익보호조치계획수립 확인 등		23	6	4	23	0	10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결정	23	3	7	23	3	7	
	과징금의 부과 등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유의 결정	23	0	10	23	0	10	
	과징금의 부과 등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유의 결정	23	0	10	23	0	10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결정	23	0	10	23	0	10	
	위반사항 등의 공표	공표의 결정방법, 공표의 방법, 절차,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결정	23	10	0	23	6	4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처분의 기준 등 결정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장기 요양보합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인건비 지출 비율 결정	23	0	10	23	0	10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청구 절차 및 지급방법 결정	23	0	10	23	0	10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급여종류, 장기요양등급) 등 고시	23	6	4	23	0	10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 결정	23	0	10	23	0	10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기준 중 소득 재산 등의 기준 결정	23	0	10	23	6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경감절차 경감방법 등 결정	23	0	10	23	0	10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감면 등의 대상 결정을 위한 수급금액 기준 결정	23	0	10	23	0	10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방편 등 결정	23	0	10	23	0	10
	방문간호사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방문간호사서 발급 비용 비용부담방법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4	6	23	23	6	4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부위원장 지명	4	0	29	23	0	10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	4	0	29	23	0	10
		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 결정	23	3	7	23	0	10
	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23	0	10	23	0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23	0	10	23	0	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23	0	10	23	0	10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 결정	33	0	0	23	6	4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장기요양급여 내용의 지속적 관리 평가	23	0	10	23	0	10
		장기요양급여 관리 평가결과의 공표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장기요양급여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 결정	23	10	0	23	0	10
	이의신청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결정	23	0	10	23	0	10
	심사청구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설치	4	6	23	23	6	4
		심판위원회 위원 위촉	4	10	19	23	6	4
		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임기 등 결정	23	10	0	23	6	4
	국가의 부담	예산지원	4	10	19	23	6	4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사서 발급비용 중 공단부담분 및 관리운영비 전액 부담	4	3	26	23	0	10
		지방자치단체별 부담액 결정	23	3	7	23	6	4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장수 및 재원관리 등 결정	23	0	10	23	6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시행	29	0	4	23	10
기본계획 등의 평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 실시	23	0	10	23	10	0
기본계획 등의 평가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실시	23	0	10	23	6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회 설치	23	10	0	23	0	10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	4	10	19	23	0	10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23	10	0	23	0	10
재정지원		재정지원	4	10	19	23	0	10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시책마련	23	0	10	23	0	10
		지원방법 기준 등 결정	23	0	10	23	0	10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마련	23	0	10	23	0	10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지원		평생교육기회확대 시책 마련	33	0	0	23	0	10
	평생교육진흥사업 비용 지원	23	10	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23	10	0	23	10	0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전문지원기관 지정	23	10	0	23	6	4
		시행계획의 점검 평가	23	0	10	23	6	4
		전문지원기관 지정 기준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지정구역의 지정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의 수립	33	0	0	23	0	1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적 추진 시책마련	33	0	0	23	0	10
		노인의치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비용 부담	23	10	0	23	0	10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대상 분담비율 결정	23	10	0	23	0	10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23	0	10	23	6	4
	저소득 노인의 요양 지원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의 결정	23	3	7	23	6	4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의 지원내용 결정	23	3	7	23	0	1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 출판 국제교류 등	23	0	10	23	0	10
도로교통법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에 관한 결정	23	10	0	23	6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73조 제항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23	6	4	23	0	10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지침제정 및 공표	23	6	4	23	0	10
	규제의 재검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의 폐지, 완화, 유지 등 검토(결정)	23	0	10	23	0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 등 결정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기회보장 등 정책 수립 실시	33	0	0	23	6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4	0	29	23	0	10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기준 운영, 직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보건의료 기본법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시행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른 소관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수립 시행	23	10	0	23	6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	23	10	0	23	10	0	
	계획수립의 협조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	23	0	10	23	10	0	
	비용의 보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4	0	29	23	6	4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주요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 시행		23	0	10	23	6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심역할수행 시책마련		23	3	7	23	6	4
		전문인력양성 및 건강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23	0	10	23	6	4
	노인의 건강증진	노인의 건강 보호 증진 시행 강구	23	0	10	23	6	4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책 수립 시행	23	10	0	23	6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실태조사	23	0	10	23	0	10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인근지역의 보행환경정비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수립	33	0	0	23	0	10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및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23	10	0	23	6	4
		기본계획 수립 시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3	10	0	23	0	10
		기본계획안 변경요청	23	3	7	23	0	10
		기본계획안 변경요청 반영 및 확정 고시 등	23	3	7	23	0	10
		기본계획의 변경	23	3	7	23	0	10
		기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결정	23	6	4	23	6	4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23	10	0	23	6	4
		실행계획 수립 변경의 시기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6	4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행	23	10	0	23	0	10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변경	23	0	10	23	0	10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23	0	10	23	0	10
		평가결과의 보고	23	0	10	23	0	10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보행환경 증진방안 수정 보완 지시	23	0	10	23	0	10
		보행환경 증진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23	0	10	23	0	10
		보행환경 증진방안 미련 대상사업의 범위 규모 등 결정	23	6	4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23	10	0	23	6	4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위촉	23	10	0	23	6	4
		민간투자사업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	23	0	10	23	6	4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 자체 구성 운영	23	0	10	23	0	10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공고	33	0	0	23	0	1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확정절차 등 결정	23	10	0	23	0	10
	민간투자대상 사업의 지정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23	0	10	23	0	10
		사업 타당성분석 및 결과요약 보고(국회제출)	23	0	10	23	0	10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사실의 고시	23	0	10	23	0	10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 결정	4	0	29	23	0	10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33	0	0	23	6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고시	23	10	0	23	6	4
	이의신청	조처에 대한 이의 시 분쟁조정신청	4	0	29	23	0	10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설치	4	10	19	23	6	4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지명	4	10	19	23	6	4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분쟁조정신청 접수시 신청내용의 통지	4	0	29	23	6	4
		조정예 응할 것인 가에 대한 통지(접수)	4	0	29	23	6	4
	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4	0	29	23	6	4
		당사자 중 일방의 조정거부 내용의 통지	4	0	29	23	0	10
당사자 중 일방의 소 제기 시 조정중지 및 재소사실의 통지		4	0	29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처리기간	조정안 작성 기간의 연장	4	0	29	23	0	10
		기간연장 사실의 통보	4	0	29	23	0	10
	조사 및 의견청취	서류열람 및 사업장 출입 조사	4	0	29	23	0	10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4	0	29	23	0	10
	조정 전 합의	합의 시 조정 중단 결정	4	0	29	23	0	10
	조정의 효력	조정안 작성 제시	4	0	29	23	0	10
		조정안 수락 여부의 통보(접수)	4	0	29	23	0	10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	4	0	29	23	0	10
	비용의 부담	비용 예납의 청구	4	0	29	23	0	10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결정	23	0	10	23	6	4
	감독 명령	사업시행장의 민간투자사업 업무 감독 등	4	0	29	23	6	4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 변경 등의 처분	4	0	29	23	6	4
	청문	처분 전 청문	4	0	29	23	0	10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4	0	29	23	0	10
		지정취소 사실의 고시	4	0	29	23	0	10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보고서 공개 및 국회 제출	23	10	0	23	6	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등	23	10	0	23	6	4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의 필요한 사항 결정	23	10	0	23	0	10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	금융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요건, 절차 등 홍보	23	0	10	23	0	10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과 정기평가	23	10	0	23	10	0
		지원계획 수립 및 사회보장급여제공등에 필요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지급방법 등의 변경	23	3	7	23	0	10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장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결정	23	0	10	23	0	10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권고 등	23	0	10	23	0	1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 방법 등 결정	23	3	7	23	0	10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23	0	10	23	0	10	
사회복지 사업법	지도 훈련	훈련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23	0	10	23	0	10	
	임원의 해임명령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 기준 결정	23	0	10	23	0	10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4	10	19	23	0	10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3	10	0	23	0	10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23	10	0	23	0	10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23	10	0	23	0	10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23	0	10	23	0	10
		사회복지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보험가입의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비용의 보조		4	0	29	23	0	10
		사회복지시설의 보험가입 시설 범위 결정		23	10	0	23	0	10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기관 및 절차 결정	23	10	0	23	0	10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의 제정	23	0	10	23	0	10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대상 시설과 서비스 내용등 결정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33	0	0	23	10	0
		자살예방 기본계획 통보	33	0	0	23	10	0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33	0	0	23	10	0
		시행계획 및 과년도 계획 추진실적 보고	23	10	0	23	6	4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결정	23	10	0	23	6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33	0	0	23	6	4
		자료제출의 요구	23	10	0	23	0	10
		보조기기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23	10	0	23	0	10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실시	23	0	10	23	0	10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23	0	10	23	0	10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23	0	10	23	0	10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3	0	10	23	0	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교부 등	보조기기 신청자 범위, 보조기기 교부·대여 사후관리 및 비용지급 기준과 방법 결정	23	10	0	23	0	10
		보조기기 정보제공	23	0	10	23	0	10
	보조기기 정보제공	정보제공 내용과 방법 결정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앙보조기기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 설치 운영	4	6	23	23	6	4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4	0	29	23	6	4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23	0	10	23	0	10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23	0	10	23	0	10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4	29	0	23	0	29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4	0	29	23	0	10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4	0	29	23	6	4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0	29	23	6	4
		업무위탁	4	0	29	23	0	10
		중앙센터 설치 운영 경비 지원	4	0	29	23	0	10
		전문인력의 배치	23	0	10	23	0	10
	중앙센터의 설치 운영 인력배치 사항 등 결정	23	10	0	23	0	10	
지역보조기기센터	지역센터 설치 운영 인력배치 등에 관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책 마련	23	10	0	23	0	10
	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23	0	10	23	0	10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결과공표의 방법과 범위 등 결정	23	10	0	23	0	10
		자료제출의 요구	23	0	10	23	0	10
	설치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행	33	0	0	23	0	10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33	0	0	23	6	4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설치의 지원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23	10	0	23	6	4
		편의시설 설치 경우, 조세감면	23	0	10	23	6	4
	연구개발의 촉진 등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 촉진 시책마련	23	0	10	23	6	4
	연구개발의 촉진 등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작성보급	23	0	10	23	0	10
	적용의 완화	세부기준 완화 승인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0	10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4	0	29	23	0	10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우반행위 종류 및 이행강제금 금액 결정	23	0	10	23	0	10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계획의 수립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33	0	0	23	6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3	0	0	23	6	4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 결정	23	10	0	23	6	4
치매관리법	치매연구사업	치매 연구개발사업 시행	23	10	0	23	6	4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	23	10	0	23	6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3	10	0	23	6	4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23	3	7	23	6	4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 시행	23	0	10	23	0	10
		치매검진사업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 결정	23	0	10	23	6	4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 결정	23	3	7	23	0	10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결정	23	0	10	23	0	10
	치매등록 통계사업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 조사 사업	23	0	10	23	0	10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기획 사무	관리 사무	집행 사무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
치매관리법	역학조사	치매발생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	23	0	10	23	6	4
		역학조사 실시시기, 방법, 내용 등 결정	23	0	10	23	6	4
	자료제공의 협조 등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4	0	29	23	0	10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중앙치매센터 설치 운영	4	10	19	23	6	4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23	10	0	23	10	0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23	0	10	23	6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23	0	10	23	6	4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23	0	10	23	0	10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23	10	0	23	0	10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23	0	10	23	0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23	0	10	23	0	10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한 업무	23	0	10	23	0	10
		업무위탁	23	0	10	23	0	10
	중앙치매센터 설치 운영 및 업무위탁 사항 결정	23	10	0	23	6	4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0	29	23	0	10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등 결정	23	0	10	23	0	10
	치매상담전화 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전화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결정	23	0	10	23	0	10
비용의 지원	비용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결정	23	0	10	23	6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노인수용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려 및 처우에 필요한 사항 결정	23	0	10	23	0	10
환경보건법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노인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23	0	10	23	0	10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환경유해인자가 노인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적 조사 평가	23	0	10	23	0	10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조치 수행 등	4	0	29	23	0	10

〈표 6〉 노인복지사무 중 지방(기초)사무 분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5·18민주 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신상변동의 신고 등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상변동 신고			
		신상변동에 따른 조치 통보			
		자료제출 요구			
	교육지원 신청	교육지원 신청			
		자료 또는 정보제공 등의 서 제출			
	학습보조비의 지급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 신청접수			
	직업훈련	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의료지원	의료지원		의료지원	
	진료	진료	보훈병원	진료	
		비용부담			
		감면된 비용지급	보훈병원	국가·공단	
	보철구 지급	보철구 지급		현물(보철구)지급	
	대부	대부			
	대부의 신청	대부신청 접수			
		대부		대부금 지급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수급자에게 보조금 지급	
	담보 등	채권보전조치		채권보전조치	
		저당권 말소	국가보훈처 훈령	저당권 말소조치	
	대부의 승계	채무승계 신고(접수)			
	양로지원	양로시설 지원		양로시설에서 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본인부담액 일부 보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신청			
양로지원 등의 위탁	양로지원 위탁		위탁		
수송시설 이용 지원	수송시설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송시설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보조금 환수		학습보조비, 취업지원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능력개발장려금, 능력개발지원비, 의료지원비, 보조금, 요양지원 보조금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5·18민주 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결손처분		결손처분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지시 신고접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의료기관으로 인도	사법경찰관리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의 청구 등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		법원에 청구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	1항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청구
		임시조치의 청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요청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접수
		임시조치 미신청시 사유 보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고		
	간접임시조치	간접임시조치 집행	간접을 요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 을 수 없을 때	법원결정 전	간접임시조치
		간접임시조치결정서 작성		문서작성	간접임시조치 결정서 작성
	간접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임시조치의 신청(청구)	간접임시조치 시 경찰관리는 즉시 검사에게 신청 검사는 48시간 내 법원에 청구	간접임시조치 후 사후조치	간접임시조치 시 임시조치 청구
		간접임시조치 취소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아니한 경우		간접임시조치의 취소
	공익 신탁법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접수)		대통령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접수)					
합병인가		합병인가 신청서 제출(접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심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하는 경우, 심사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	교통사업자 대상 교육	교통사업자 대상 의무교육		
	실태조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조사	제25조 제2항은 시장 군수			
		보행환경실태 조사	제25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	제25조 제2항은 시장 군수			
기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	제25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구강보건법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의 실시			진단 및 교육	
국민연금법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국민연금공단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 설치 운영		
기초연금법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독촉		환수금의 고지		
노인복지법	상담입소 등의 조치	상담지도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결정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긴급전화의 설치 등	긴급전화 설치	지장절차,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 결정	보건복지부령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기록 보관			기록보관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발치 교육	일반인 상해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노인보호 사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 사무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복지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및 위탁운영 기준 결정	대통령령		
		직무 상 신고의무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학대 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노인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조사 요청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권고	권고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받을 것을 권고	
		노인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조사 요청	관계기관의 장에게 운영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기관 운영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요청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숙식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전문상담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 보호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 노인치유 프로그램 제공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제공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학대피해 노인의료비 지원	피해자 의료비 보조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또는 공표 전 청문	처분 또는 공표 전 청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지도 감독 등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현장 검사		사무에 관한 지도 감독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현장 조사	보고서 제출요구 또는 현장조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보조기기 센터	시군구에 지역센터 설치 운영			포괄적 사항	
차매관리법	광역차매센터의 설치	업무위탁			포괄적 사항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록 및 결정	등록신청				
	직업훈련	직업재활훈련		직업재활훈련		
	대부금의 상환기간	대부금 환수		대부금 환수		
	주택의 분양	분양 임대		주택분양 임대		
	담보재산의 매수 등	경매에 부처진 담보재산의 매수		담보재산의 매수		
	예우의 정지	예우의 정지(3년 이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실시 및 보고		교육실시 후 보고접수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운영 등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긴급구조 지원		긴급한 구조의 지원	
		임시보호		경찰관서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 임시보호	
		위탁시 경비지원		경비지원	
	상담소의 설치운영	상담소 설치운영 신고 접수		상담소 설치운영 신고 접수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보고접수		인가받은 보호시설의장으 로부터의 보고접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보호비용 지원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양육 비, 직업훈련비 등 지원	
	수사기관의 협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동행요청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경찰관서에 요청	
	사법경찰 관리의 현장출동 등	현장출동 시 동행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에게 요청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출동시 동행요청	
	감독	보고요청, 조사, 서류검사 등		감독	
	청문	청문		처분 전 청문	
	경비의 보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경비 일부 보조		경비보조	
	치료보호	치료보호비의 대지급	가정폭력행위자 를 대신하여 지급		대지급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고의무 등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종사자 및 기관장 등에 대한 의무		신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사법경찰관리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업무 수행비용의 보조		비용보조	
	인증의 취소	인증취소		인증취소	
		취소사실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통보	인증취소사실의 통보	
	청문	인증기관 취소 전 청문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에서 의 행위제한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의 허가	법률 제2조 제항 제외 항목		
건강검진 기본법	가정에 대한 지원	안정된 주거생활지원			포괄적 보호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포괄적 보호지원
		노인단독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 지원			포괄적 보호 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에 의해 가족기능이 저하된 경우의 긴급지원			포괄적 보호지원
		지원기간의 연장			지원기간의 연장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전문가의 개입과 서비스 노력	
	가정봉사원	가사 간병 지원		가사 간병 지원 가정봉사원 지원	
		가정봉사원 비용지급		가정봉사원 비용지급	
	이혼예방 및 이혼조정 지원	이혼의사가 정해진 가족 지원		이혼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한 재문제 지원	
	건강가정 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기초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가족기초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의 설치	건강가정사 배치		건강가정사 배치	인력배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상담 또는 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조치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조사 연구사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의 종류	도움이 필요한 사람(노인) 등의 신고불이행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 시체 또는 사산아	벌금 10만원 또는 구류, 과료처분	
고령친화 사업 진흥법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지원상당액의 환수		지원액 환수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관할법원으로 이송			
고연제 후유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의 결정 등록 등	적용대상자 등록신청(접수)			
		사실확인 요청	국가보훈처장→국방부장관		
		사실여부 확인 결과 통보(수신)	국방부장관→국가보훈처장		
		검진의뢰	국가보훈처장→보훈병원장		
		신청인에게 통보(적용대상자 외 확인)		해당자가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사실의 통지 및 소명자료접부 이의신청 접수	
		검진결과의 통보(접수)	보훈병원장→국가보훈처장		
		대상자결정 후 결과 통지			
	적용대상자의 결정 등록 등	등록부 등록		등록부 등록	
	신상변동의 신고 등	신상변동의 신고(접수)		사망, 국적상실, 행방불명 등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환수 등 조치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환수 및 통지	
		신상변동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요양지원에 대한보조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보조		본인부담비용의 일부 보조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신청접수 및 신청인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진행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수익사업 승인 취소		승인취소	
	보조금 지급	보조금 교부		고연제전우회 운영등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고연제 전우회의 회계 조사 등 검사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 요구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당 등의 환수	진료비용 환수				
		수당의 환수				
		학습보조비 환수				
		직업재활훈련비 등 환수				
		요양시설에 대한 보조금 환수				
	결손처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후 결손처분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공공기관, 민간기관, 민간단체 등 포함		
	공익 신탁법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수탁자와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의 법령위반행위 보고			
		합병인가	공익신탁 합병 인가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인가 의결유, 등기촉탁		대통령령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공익신탁 인가 취소		등기촉탁 (법원 등기소)		
		처분 전 시정 또는 보완 요청		인가취소 처분		
		처분 전 청문			처분 전 보완요청	
공익신탁의 종료		인가취소 후 명칭변경 등기촉탁				
		종료 신고 접수 및 승인		신탁의 명칭에서 공익 삭제 변경등기 촉탁		
		청산종결 등기 촉탁	공익신탁 종료 승인			
자료제출 등 요청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시정요청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소속공무원의 검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		
신탁법 상의 권한		수탁자 선임 직권 행사		수탁자 해임		
조세감면 등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수탁자 선임		
과태료		과태료 부과 징수	조세감면		조세 감면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출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심을 받는 사무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교통이용정보체제 구축 등 지원		조례로 결정	
	교통수단 등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시		국토교통부령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지역대상 인증	교통수단 여객시 설 도로 대상 인 증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환경 구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과 공동으로 인 증기관 지정 시 공동부령으로 결 정	국토교통부령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대통령령	
	보행우선구역에서 의 조치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조치요청		비용보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 등		지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제한,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 등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작성 보관		대통령령	
	실태조사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조사	제25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실태조사	관계기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지원요청		제25조 제4항에 관한 것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제3 항에 관한 것은 사민의 조례로 정 함	
	이행강제금	시장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설치 또는 개선명령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설치 또는 개선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계고		대통령령	
		이행강제금 부과액, 부과사유, 납부기간, 납부방법, 이의제기 방법 등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사전계고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이행강제금 납부방법, 이의제기방법 통지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구강 보건법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배치			계획수립 기준 결정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평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사업시행
		시행결과의 평가 및 세부계획 시행결과 제출			시도지사에게 제출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포함				평가방법 등 결정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조금 지급신청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양로지원 등의 위탁	양로지원 비용부담			사무(양로지원) 위탁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국민 연금법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공급 인대와 운영 사업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급여지급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위탁범위의 결정	대통령령		
	연금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지급 정지사유 발생 시 사유의 소멸 시까지 지급정지	국민연금공단	지급연금액 산정 결정)		
	급여수급전용계좌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	국민연금공단	지급정지		
	미지급급여	미지급급여 청구		대통령령		
	급여의 환수	급여의 환수		국민연금공단	미지급급여 지급신청 접수(수급권자 사망 5년내)	
		환수이자의 가산		국민연금 공단		급여의 환수공단이므로 처분에서 제외)
		연체금 가산		국민연금 공단		이자의 가산
		수급권, 과오납금에서 환수금 충당		국민연금 공단		연체금 징수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채납처분 등	환수금 납입고지		국민연금 공단		환수금 상계 충당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채납처분 등	환수금 납입독촉		국민연금 공단	환수금 납입고지	
	노령연금수급권자	노령연금 지급		국민연금 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공과금 감면	조세 공과금감면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분할연금 신청구 및 신청구 취소			보건복지부령	
		분할연금 지급		국민연금 공단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신청			보건복지부령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국민연금법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국민연금 공단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신청 접수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55세까지 지급 정지	국민연금 공단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공단		유족연금 지급정지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공단	반환일시금 액수 결정(대통령령에 따른 이자 부가)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연금보험료의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공단		업무위탁
국민영양관리법	통계 정보	통계 및 정보 수집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	식품영양에 관한 통계정보 수집 관리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식생활 행태 조사			
		영양상태 조사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조사의 정기적 실시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	기초연금의 지급		보건복지부령	
	기초연금액의 환수	가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의 환수		보건복지부령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의 환수	이자를 붙여 환수	기초연금액 환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의 환수		기초연금액 환수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납입고지		기초연금액 환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환수금의 독촉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 결정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환수금의 징수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사회복지사업법의 정보 시스템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연계사용	시스템의 연계사용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방송사업자가 요청	독자적 홍보영상 제작 송출 지원 요청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경로우대	민간시설 이용요금 할인 권유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복지법	경로우대	노인이용요금 할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민간시설 이용요금 할인 권유	민간시설 이용요금 할인 권유	
	건강진단 등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	노인에 대해 이용요금 할인 사업자 지원	노인에 대해 이용요금 할인 사업자 지원	사업지원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필요한 지도 등)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방문요양서비스 및 보호조치	건강진단 사후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	
	상담입소등의 조치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의 상담 지도	상담지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시설입소 또는 입소위탁	시설입소 또는 입소위탁	
		상담지도	시설입소 또는 입소위탁	시설입소 또는 입소위탁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65세 미만 대상, 상담 지도	65세 미만의 자 대상 상담지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입소위탁	65세 미만 대상, 시설입소 또는 입소위탁	65세 미만의 자 대상, 시설입소 또는 입소위탁	
		입소조치 대상자의 장례	65세 미만 대상, 시설입소 또는 입소위탁	65세 미만의 자 대상, 시설입소 또는 입소위탁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설치	민간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접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설치	노인주거복지 시설 설치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설치	민간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접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설치	민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접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 보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 설치 신고 기준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냉면비용 보조	정부양곡구입비 보조	비용보조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냉면비용 보조	비용보조	
수도요금 감면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	요금감면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 의 설치	민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접수)	재가노인복지시 설의 설치	재가노인복지시 설의 설치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	요양보호사 배치	재가노인복지시 설의 운영기준, 신고기준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응시 및 자격증 교부 수수료 징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청문(처분 전 청문)	1호~4호의 경우	지정취소/업무정 지 처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 자료제공	자료추적	사업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지역노인보호전 문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업무지원	지역노인보호전 문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지역노인보호전 문기관 상담원 심화교육	지역노인보호전 문기관 상담원 교육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지역노인보호전 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 문기관 설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신고접수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현장조사	현장조사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 및 학대기피자에 대한 상담	상담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직무 상 신고의무자의 교육과정의 신고의무 관련교육 내용 포함	노인학대 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	노인학대 신고 접수(신고의무자 대상)	
	응급조치 의무 등	현장확인 및 현장확인 동행 요청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 내용 시간 방법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응급조치 의무 등	조사 질문 등	노인보호전문기 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신고접수후 현장 출동 및 노인보호전문기 관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의 상호 동행요청 등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노인보호전문기 관의 직원이나, 사법 경찰관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질문 등	
		피해노인, 보호자, 노인학대행위자 신분조회등 협조	노인보호전문기 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복지법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출(접수)	신분조회 요청 절차 범위 결정	대통령령	
		실종노인 발생예방 등 업무 위탁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출(접수)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출 접수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연구	업무위탁	노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업무위탁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조사연구	실종노인 관련 조사 연구	
		그 밖의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	DB구축 운영		실종노인 DB구축 운영
	조사 등	금지행위(39조의 9)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가타사항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괄적 사항
	조사 등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등	39조의 9 금지행위 위반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청문(처분 전 청문)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처분	
	노인학대 등의 통보	노인학대 의심사유의 통보	자격취소 절차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피해노인 보호조치	사법경찰관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등 권고	사법경찰관리의 통보에 따른 피해노인 보호조치	사법경찰관리의 통보에 따른 피해노인 보호조치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노무제공 여부 점검 확인	관계기관의 장에게 종사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요청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점검	취업제한 위반사항 확인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거부 시 처분 및 처분 요구	기관폐쇄요구 또는 해임요구	취업제한 위반시 기관에 대한 기관 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 요청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복지법	위반사실의 공표	39조의 9(금지행위) 위반사실로 처벌받은 사실 공표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및 절차, 범위 등 결정	대통령령	
		처분 또는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표	39조의 9 금지행위 위반 사실 공표	위반시설 공표	
		공표 전 공표사실의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자경처분 또는 금지행위에 따른 처분 및 처벌사항에 대한 시설장 및 종사자 공표	위반시설(시설장, 종사자) 공표	
		공표 절차 방법 등 결정	공표실시전 공표사실 통지 및 소명기회부여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전 공표사실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컴퓨터의 설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기해자 상담서비스제공	
		컴터 운영 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령	포괄적 사항
	변경 폐지 등	시설설치신고사항 변경 시설폐지 또는 휴지 신고(접수)	컴터 설치, 운영 기준 및 이용대상, 절차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변경 폐지 등	시설설치신고사항 변경 시설폐지 또는 휴지 신고(접수)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폐지 휴지 신고(접수)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등 신고	
		시설폐지 휴지 시 시설이용자 권익보호 조치 여부 확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 변경 또는 시설 폐지 휴지 신고(접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설치사항 변경, 시설 폐지, 휴지 등 신고접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복지법	사업의 정지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자료 제출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의 자료 제출(복지실시기 관에 제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청문	사업의 폐지 명령 전 청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결정	보건복지부령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유익비용의 부담	처분 전 청문	처분 전 청문	
	비용의 수납 및 청구	부양 의무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 입소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 청구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지급	비용부담	
		입소자 또는 이용자(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외)로부터의 비용 수납 신고(접수)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보건복지부령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수납 신고 접수	입소자 또는 이용자(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외)로부터의 비용 수납 신고(접수)		
	비용의 보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비용 보조	시설이용 비용 수납에 관한 신고(접수)		
	유류물품의 처분	복지시설의 장이 사망자의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장례에 필요한 비용충당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비용 보조	비용보조	
	조세감면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토지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 감면	유류물품의 처분으로 장례비용 충당		유류물품의 처분으로 장례비용 충당
	심사청구 등	복지조치에 대한 이의 심사 청구(접수)	조세 및 공과금 감면		조세 및 공과금 감면
		심사청구 사항의 30일 이내 심사결정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심사청구의 접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복지법	심사청구 등	보호를 행한 자와 보호자 간 보호비용 조정요청 접수 및 조정	심사청구 결과의 통보	심사 결과의 통보	
		보호비용 결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자료 제출 요구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 조정	보호비용의 결정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배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국 공유재산의 대부 등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또는 사업육성 목적의 국공유 재산 무상대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 결정	대통령령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 목적으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비용 지원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실시	국가 등의 책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설립지원	국가 등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국가 등의 책무	포괄적 사항
	실태조사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조사		실태조사 결과 공표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조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조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규모 등 조사			
	장기요양 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외국인 제외 결정	외국인 가입자 제외 결정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통합징수 및 구분 고지	보험료 징수		보험료 징수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회계 구분 관리	보험료 부과	보험료 부과 고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의 접수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보험료 감면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조사의뢰 또는 공동조사 요청의 접수	소견서 발급비용·비용부 담방법·발급자의 범위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조사일정 및 조사담당자의 통보	공단의 소속직원이 직접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의뢰 등	공단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의뢰, 공동조사 요청의 접수	
		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송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조사 계획 통보	장기요양 인정 신청 조사 일정 등 통보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제출	조사결과서 작성 및 공단에 송부	조사결과서 작성 및 송부	
	장기요양등급판정 기간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 대한 통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 로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심의 및 판정기간 연장의 사유 내용 기간 통보	장기요양등급 판정기간 연장의 통보	
		수급자 제외판정에 대한 내용 및 사유 통보요청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내용 및 사유 등 통보 요청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의 통보를 공단에 요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접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접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대리자 지정	공단이 변경신청 접수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특례요양비	특례요양비의 지급	가족요양비의 지급 절차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간병비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 절차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로의 이체 등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결정	대통령령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 입금관리	공단의 특별현금급여 입금	특별현금수급계좌에 특별현금급여 입금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금지 결정(자료제출, 보고검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단의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제공금지 결정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중단(처분성격)이나 공단이 결정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공단의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제공금지 결정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중단(처분성격)이나 공단이 결정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명세의 통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접수)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시설 및 인력기준 결정	보건복지부령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에 관한 변경	신고접수 및 공단통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장기요양기관별 급여내용, 현황자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변경신고 접수 및 공단통보	변경신고 접수 및 공단통보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기관정보 게시 내용, 방법, 절차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신청시 거부 금지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신청 거부 금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폐업/휴업의 신고(접수) 및 공단에 통보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기준 결정	보건복지부령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 시 공단에 내용통보	이용자 조차계획 수립 및 수급자 권인보충조치 확인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권익보호 조차계획 확인 및 미비 시 다른조치 강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 시 공단에 내용통보	사업정지 또는 폐지 시 공단에 내용통보	
	시정명령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공단이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이관	자료의 공단이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의 공단통보, 도지사 경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각호)의 기준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내용의 공단 통보, 도지사경유, 보건복지부장관 통보	재가장기요양기 관의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	(각호)의 기준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과징금의 부과 등	과징금 (체납)장수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결정	대통령령	
	위반사항 등의 공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공표	과징금 부과 장수사항의 기록 및 기록관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록 및 기록관리	과징금 부과기록 및 기록관리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장기요양기관의 총사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제한	공표관련 제 기준사항 결정	대통령령	
		처분내용의 공단 통보	급여제공의 제한(업무정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정지처분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접수)	처분의 기준 방법, 통보의 방법 절차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심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 용 청구 접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액 조정 지급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공단이 청구심사 후 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의 징수	방문간호지사서 발급 비용 비용부담방법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가정행위 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범위초과, 급여제한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득의 징수	공단이 징수	부당이득금 징수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공모자에 대한 연대 징수	공단이 징수	부당이득금 징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 및 수급자에게 지급	부양의무자세대 원에 대한 연대 징수	공단이 징수	부당이득금 징수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부위원장 지명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지명	보건복지부 차관이 부위원장 지정	
	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공단의 사무		지적관리(포괄적 사항)
		신청인에 대한 조사	공단의 사무	보험료 부과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공단의 사무	신청인에 대한 조사	
	관리운영기관 등	수급자에 대한정보제공 등 이용지원	공단의 사무		급여 관리 및 평가
		급여비용의 심사 및 특별한금급여 지급	공단의 사무		상담 안내 등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공단의 사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지급 및 특별한금급여 지급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공단의 사무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등	공단의 사무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공단의 사무	급여제공 기준 개발, 적정성 검토 등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접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이의신청사건의 심의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단이 접수			
	심사청구	심사청구		대통령령		
	자료의 제출 등	자료제출의 요구	지자체 부담액 부과 징수 재원관리 등 결정	대통령령		
	보고 및 검사	보수, 소득 등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서류검사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관리 평가,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구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장기요양급여 제공 명세, 재무회계 자료 제출 명령 및 관계서류 검사	보고 및 검사	보수소득 자료제출 명령 및 관계서류 한정검사 등		
청문	처분 또는 공표 전 청문	보고 및 검사	급여제공명세, 재무회계 사항 등 제출 명령 및 관계서류 검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노인복지시설 등 집단화된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노인복지 시설설치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전문지원기관의 경비보조	시행계획의 점검 평가	시행계획의 점검 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 취소 또는 지정명령	전문지원기관 경비보조	전문지원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	예산지원(출연, 보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 적정성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전문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복지시설의 우선지원	사회복지시설 개선사업시 농어촌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재정 지원	비용분담비율 결정	보건복지부령		
	저소득 노인의 요양 지원	간병, 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 서비스 제공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보건복지부령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	대한노인회 유탁사무		포괄적 사항
		노인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대한노인회 유탁사무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대한노인회 유탁사무		포괄적 사항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활동	대한노인회 유탁사무		포괄적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활동	대한노인회 유탁사무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추진	
	협조 및 지원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편의 제공 및 협조 지원 등	대한노인회 유탁사무		포괄적 사항
	국유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대한노인회 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활동지원	포괄적 사항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계약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
	비용의 보조 등	활동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등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계약 체결		무상대부계약 체결
	결산 등의 보고	수입 지출 결산 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 보고(접수)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예산 등 보고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보고(접수)	
		공인회계사 지정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수입지출결산보 고 및 사업실적 보고	수입 지출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접수)	
	지도 감독 등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의 감사보고서 첨부를 위한 공인회계사 지정	감사보고서를 위한 공인회계사 지정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도로 교통법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포괄적 사항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교육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노인보호구역지 역 절차 및 기준 결정	노인보호구역 지정절차 및 기준 결정	
	교통안전교육기관 의 지정 등	교통안전기관 지정증 발급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지정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의 교육 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기 관 지정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기간 5년(65세 미만 10년)	교통안전교육기 관 지정증 발급	교통안전교육기 관지정증 발급	
도로 교통법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기간 중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기간 5년(65세 미만 10년)	매 5년 마다 운전면허 갱신(65세 미만, 매 10년마다 갱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조성계획 수립 전 도시공원 설치 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개선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 공원설치	교통약자이동편 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 도시공원 설치	
	도시자연공원구역 에서의 행위제한	노인복지시설 입지 등 행위제한의 예외 허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개선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 공원설치에 따른 계획 변경	교통약자이동편 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일부 보조	비용의 보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위탁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지급액 등 결정	대통령령	
		양로지원 비용부담	양로지원 등의 위탁	양로지원 등 위탁	업무위탁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요양지원 보조금 환수	양로지원 비용 지급	양로지원 비용 지급	
		요양지원 보조금 환수액 징수	국가보훈처장이 잘못지급된 요양지원 보조금 환수	요양지원 보조금 환수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등	장기요양요원이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사실 신고 접수	노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관련 활동 지원	노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 지원 시설 및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	포괄적 사항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	노인요양요원의 발달장애인 유기 등 신고접수(수사기 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직무상 신고 접수(수사기관,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장조사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및 현장동행 요청	장기요양 요원의 자격취득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에서 신고의무 내용 교육	발달장애인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신고접수 후 현장 조사 및 질문 등	신고 접수 후 즉시현장 출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수시기관 상호간 동행요청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현장에서의 질문 등 조사 및 발달장애인 보호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및 발달장애인 보호	
		발달장애인 격리보호 기간연장 사전승인	발달장애인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인도 등	발달장애인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인도	
		발달장애인 격리보호기간 종료전 시설 입소 의뢰 접수	발달장애인 격리보호 통보접수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장애 대한 사전승인	발달장애인 격리보호기간 연장 사전승인	
		보호조치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입소 의뢰 접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보호시설 입소조치 의뢰 접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보호조치 수행 경비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수행경비 지원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내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지원	예산지원(비용 보조)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보건의료 기본법	비용의 보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보건 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국회 보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인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노력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책 수립 시행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책 수립 시행	
	보행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노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통령령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노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 구역 지정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고시 등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행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행	
		보행환경개선사업 비용의 보조	계획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변경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의 변경	
	보행환경개선 지구 지정 해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	관리대장 작성 보관	관리대장 작성 보관	관리대장 작성 보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의 고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	지정해제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주무관청에 제안서 제출(접수)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고시	민간투자 대상사업 결정의 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통지 및 공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접수	제안서 접수	
		제안서 검토 평가 후 협상대상자 지정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통지 및 공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의 제안서에 대한 통지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 결정	제안서 검토 평가 후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계획 작성 제출(접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계획고시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작성 제출(접수)	사업계획 신청접수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대상자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접수)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신청(접수)	실시계획 승인신청 접수	
		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승인	
	국유 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등	국유 공유 재산의 매각 (수의계약)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국유 공유 재산의 대부		수의계약 매각	사업 (국공유)토지 매각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접수			사업 (국공유)토지 대부
		이의신청의 처리 및 통지			
		조치에 대한 이의 시 분쟁조정신청	이의 신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 및 통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조치	포괄적 사항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분쟁조정신청 접수시 신청내용의 통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지명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 지명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조정에 응할 것인 기에 대한 통지(접수)	분쟁조정 신청 접수시 상대방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접수내용 통지	분쟁조정 신청 접수 시 상대방에 대한 통지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조정외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조정여부 통지(접수)		통지의 접수
		당사자 중 일방의 조정거부 내용의 통지	조정거부 결정	조정거부결정 및 결정사항 통지	
		당사자 중 일방의 소 제기 시 조정중지 및 제소사실의 통지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한 통지	조정거부의 통지	
	처리기간	조정안 작성 기간의 연장	조정 중 제소 시 조정중지 결정 및 제소사실의 통지	조정중지 결정	
		기간연장 사실의 통보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연장결정	조정안 작성 연장 결정	
	조사 및 의견청취	서류열람 및 사업장 출입 조사	조정안 작성기간 연장의 통지	조정안 작성 연장 결정의 통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서류열람 및 사업장 출입 조사	현장조사	
	조정전 합의	합의 시 조정 중단 결정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조정외 효력	조정안 작성 제시	조정중단 결정	합의 시 조정중단 결정	
		조정안 수락 여부의 통보(접수)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당사자에게 제시	조정안 제시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	조정안 수락 여부의 통보(접수)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접수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의 접수
	비용의 부담	비용 예납의 청구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	조정서 작성
	감독 명령	사업시행장의 민간투자사업 업무 감독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결정	대통령령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 변경 등의 처분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업무감독 및 명령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청문	처분 전 청문	법령위반행위에 따른 명령, 처분, 사회기반시설 공사 중지 변경 등 처분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주무관청의 처분 전 청문	처분 전 청문	
		지정취소 사실의 고시	주무관청의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	
	보고 검사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접수) 등	대상사업 지정 취소 사실의 고시	지정취소 사실의 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보고(접수) 현장조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 접수 등	
	재정지원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장기대부	민간투자사업 보고서 제출, 공개, 종합평가 등 필요사항 결정	대통령령	
	부담금 등의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장기대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감면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부담금 등 감면
	조세감면	조세감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감면		부담금 등 감면
과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감면		조세감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과태료 부과징수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보장기관 업무담당자의 직원 신청	주소지 보장 기관에 사회 보장급여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 접수		
		수급자 변동신고 신고의무 고지	보장기관 담당자 의 신청인에 대한 고지			
		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고지	보장기관 담당자 의 신청인에 대한 고지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 조사	보장기관 담당자 의 신청인에 대한 고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접수 시 조사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 조사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접수 시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조사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접수 시 조사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 조사	보장기관의 장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조사	보장기관의 장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가타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권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보장기관의 장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보장기관의 장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거주지 등 현장조사	자료제출의 요구			
		관련전산망 이용을 위한 협조요청	거주지 등 방문 조사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구득	관련 전산망 이 용을 위한 협조요 청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 제공요청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구득	금융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구득		동의서구득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사회보장급여 제공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제 공 결정	사회보장급여제 공 결정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등 통지	지원대상자와 친 족 등 관계인 의 견청취	사회보장급여 제 공 결정 등을 위 한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정보공유 등 협조요청	정보공유 등 협조요청	사회보장급여 대 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등	홍보 공고 등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정보공유 등 협 조 요청	정보공유 및 협 조요청 등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 요청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사회보장급여 수요자 신고 접수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정관이 보장기관의 장에 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직무 상 신고의무 이행 접수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 신고 접수		
		신고된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직무상 의무적 신고의 접수		
	민관협력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비용 지원	지역사회보장 협 의체에 시간지대 발굴 기관 법인 등 포함운영	지역사회보장 협 의체에 시간지대 발굴 관련 기관 포함 결정	
	수급권자 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대통령령	
		수급권자에 대한 다른 기관의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제공 의뢰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상담 및 안내 등	
		전화상담센터 등 설치 운영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및 서비스제 공의 타기관 의뢰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화상담센터 설치 운영	전화상담센터 설치 운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수급권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금전적 지원 등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결정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수급자격 적정성 조사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 또는 금전적 지원 등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금전적 지원 등	
수급자의 변동신고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등 변동 신고	주급자격 적정성 확인 조사(수급자격 조사와 동일한 조사)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의 통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류 및 지급방법의 변경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부정수급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통지	사회보장수급 내용의 변경 통지		
		반환명령(또는 반환명령 면제)	부정수급비용 징수			
		반환금 통지 및 징수	과잉지급분 환수 명령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을 위한 인력, 기술 재정 등 지원	지역사회보장계 획의 시행	지역사회보장계 획의 집행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심의 자문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심의 자문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심의 자문				
		기타 심의 자문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심의 자문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설치 운영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심의 자문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심의 자문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심의 자문				
		기타 심의 자문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설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복지위원	복지위원의 위촉			조례	
		복지위원 수당지급				복지위원 위촉
	고발 및 징계요구	법위반 범죄혐의자 수사기 관에 고발			대통령령	
		법 위반행위자의 징계요구(기관장에게 요구)		수사기 관에 고발	고발	
수사기 관에 고발 또는 징계요구			기관장에게 징계요구	징계요구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조례(시군구)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 대비 시책개발	
		위탁		자원봉사활동 지원	포괄적 사항
	지도 훈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교육 훈련			업무위탁
	정관	정관변경인가	사회복지 법인 설립허가		
	임원	법인 임원 변경 보고접수	사회복지법인 정 관의 변경인가		
		감사 추천	임원 임면 시 보 고		
	임원의 해임명령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한 감사 추천		임원(감사) 추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사회복지법인 임 원에 대한 해임명 령 기준 결정	대통령령	
	임시이사의 선임	임시이사의 선임	사회복지법인 임 원의 직무집행정 지 처분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설립허가 취소등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사회복지 법인이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임시 이사 선임		임시이사 선임
	보험가입의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비용의 보조		대통령령	
	시설의 안전점검	시설의 수시안전점검 결과의 제출(접수)	보험가입 시설 범위 의 결정	대통령령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 보수 요구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접수)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 보수비용 보조	시설의 장에게 시설의 보완 개보수 요구	시설의 개보수 요청	
과태료	과태료 부과장수	서비스 최저기준 미련 대상 시설 및 서비스 내용 등 결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상담 교육	노인복지시설의 자살예방 상담 교육 실시		대통령령	
		자살예방 상담교육 비용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 교육 실시	자살예방 상담 교육 등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교부 등	보조기기 신청 접수			포괄적 사항	
		보조기기 교부 대여 또는 사후관리				
		보조기기 교부 대여 또는 사후관리 비용 지급				
		보조기기 서비스 에 대한 사례관리				
	중앙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및 관리지원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제협력
		업무위탁				포괄적 사항
	중앙센터 설치 운영 경비 지원				업무위탁	
	지역보조기기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운영		보건복지부령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전시체험차 운영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대여 수리 맞춤개조 등 사업		
	지역보조기기센터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다른법률에 의한 보조기기 교부 등 협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중앙센터 수행 사업 협력
		지역센터의 운영 위탁	시군구에 지역 센터 설치 운영 및 비용의 공동부담			
	지역보조기기센터	지역센터 위탁운영 경비 지원				업무 위탁
		전문인력 배치				지역센터 위탁 경비지원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 등	대상시설 시설주에게 관리보수 개선 등 조치 명령	세부기준 완화 승인 절차 등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관리, 보수, 개선 등 조치 명령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설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설주관기관 소관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관리 보수 개선 등의 시정조치 요청	중앙정부가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요청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및 금액 결정	대통령령		
		이행강제금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 전 부과징수 고지			
채납처분	이행강제금 징수	이행강제금 징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노인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이용 지원		포괄적 사항	
	빈 점포의 활용 촉진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비용지원	비용지원	임차비, 수리비 등 지원		
	상업거점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예산 지원	비용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비용지원		
치매 관리법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 수검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치매의 검진방법 절차 등 결정	보건복지부령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 치료 및 진단비용 지원	비용의 지원	치매검진 수검비용 지원		
	자료제공의 협조등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출 요구		보건복지부령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지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조사 및 연계체계 구축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치매 관리법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치매 관련 업무			인식개선 홍보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및 업무위탁 사항 결정	조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관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치매환자 등록 관리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등록 통계사업 지원	사업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치매예방교육 홍보		
		치매조기검진			방문관리 서비스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조기검진 서비스	
	치매상담전화 센터의 설치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 보호 관리 정보 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환자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치매상담전화 센터의 설치	그 밖에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업무 위탁					포괄적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노인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	비용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결정	대통령령		
	처우	전담교정시설에의 수용	노인수용자 등에 대한 적절한 배려 및 처우에 필요한 사항 결정	법무부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	노인수용자의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제공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	노인전담교정시 설에 수용 결정 <sup>4</sup>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환경 보전법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조치 수행 등	환경유해인자가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	환경인자가 노인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	
국민 연금법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채납처분 등	환수금 징수 승인	국민연금공단	환수금 납입독촉고지	
기초 연금법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소득인정액 결정 고시		보건복지부령	
노인 복지법	경로우대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위촉
노인 장기요양 보환법	국가의 부담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사별급비용, 방문간호서비스 발급비용 중 공단부담분 및 관리운영비 전액 부담	장기요양 보환료 예상수입액의 20% 예산지원	예산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환료 지원	국민연금보환료 일부지원	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지원	예산지원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활동	노인부양 기구에 대한 간병비용, 물품 등의 지원 내용 결정	보건복지부령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활동	대한노인회 위탁사무		포괄적 사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양로지원	국가양로시설에서의 양로지원	노인 등의 이동과 사업장의 이용편리도모, 정보접근 용이성향상을 위한 시설과 설비 설치 보수	노인 등의 이동과 사업장 이용편리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직접지구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일부 보조	국가양로시설에 서의 양로지원	국가양로시설에 서의 양로지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변경		
치매 관리법	치매연구사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가정폭력 예방 특별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단체의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치료보호	구상청구			구상청구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기관 지정신청(접수)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강가정 기본법	가정에 대한 지원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포괄적 보호지원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포괄적 보호지원
고령친화 사업 진흥법	우수제품 등의 지정 취소	지정취소사실의 통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관련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원의 정지	3년연속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의 정지			
		실형의 기간 동안의 수당지원 정지	과실범 예외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지원 영구정지)	국가보안법, 형법 등 위반에 따른 실형 확정자		
공익 신탁법	변경신고	공익신탁 명칭 등 변경시 신고		대통령령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고시 및 열람		계획확정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우탁	특별교통수단 운영 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운영 운전자 대상 의무교육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이동지원 센터 통합 운영 또는 별도 설치	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또는 별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지정계획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주민의견 청취 후 지정 및 확정 고시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보고 검사 등	제출받은 자료의 공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로지원 등의 위탁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위탁		대통령령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업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비용의 보조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국민연금법	노령연금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 지급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	지급연기 신청에 따른 지급연기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지급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지급액 조정	국민연금공단	지급연기신청의 접수 및 지급연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분할연금 청구(접수)	국민연금공단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 조정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분할비용 등 신고(접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청구 접수	
치매관리법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상변동의 신고 등	신상변동에 따른 조치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취업지원		취업지원	
	담보 등	지급보증		지급보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공		국가의 책무	
	상담소의 설치운영	상담소 설치 운영		상담소 설치운영	
	치료보호	치료보호의 실시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실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사법경찰관리	피해자 등의 시	타기관 인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의견청취,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 보완 요청	시장군수 → 시도지사,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계획의 제출	
	실태조사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조사			관리대상 작성 보관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평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평가 및 결과보고(장관)
노인복지법	노인재활 요양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실시	복지실시기관	복지실시기관의 입소자 장례	
	비용의 부담	건강진단 등과 상담 입소 등 조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설치운영 및 위탁비용 지급	비용부담	

법령	조문제목	단위사무	단위사무 설명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용 지원	국가 등의 책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	처분내용의 공단 통보 및 도지사경유, 보건복지부 통보	처분내용의 공단 통보 및 도지사경유, 보건복지부 통보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징수	공단이 징수	부당이득금 징수
	심사청구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설치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청구접수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접수	
도로교통법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안전 조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국고보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비용 보조	운전면허 갱신기간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적성검사	운전면허갱신기간 중 70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적성검사 실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 공원설치	노인보호구역 폐지 완화 유지 등 결정	노인보호구역 지정 변경 결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조사 목적 및 정보의 범위 이용방법 고지	작성신청	작성신청(지원대상자의 동의 필요, 등의 시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금융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결정	대통령령	
	민간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각지대 발굴 기관 등 포함 운영	신고 된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 결정		인력지원, 재정지원 등	포괄적 사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앙보조기기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 설치 운영	정보제공 내용과 방법 결정	보건 복지부령	
치매관리법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운영	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 관련 사항 결정	보건복지부령	

## ■ ■ Abstract

### A Study on the Functional Sharing Alternative of welfare for the Aged between the Central-the Local in the Aged Society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Koreans increases due to improvements in living standards,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the elderly population is greatly increasing.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from 7% to 14% is 18 years, and it is urgent to prepare for the aged society. Furthermore, as we have to prepare for the age of 100, we urgently need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not just an aged society.

Chapter 2 reviewed theories on the role of states,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responsivenes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bove theories, we analyzed the theories about the contribution of the welfare roles of the elderl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Chapter 3 analyzed statutory office affairs with the aim of seeking standards for central - local reorganization of welfare office work for the elderly and re - distributing welfare office work between the central and provincial level.

Chapter 4 compares the changes in the ambiguity of classifications by taking samples from statutory office and classifying the clerical classification of behavioral standards and legal purpose standar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unclassified work decreased when the work was classified as behavior - centered than the case where the work was classified mainly for legal purpose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acts of the government as a new standard, and to distribute the intergovernmental and local affairs on the basis of their respective roles fro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main purpos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s the promotion of residents' benefits, and the efficiency of decentralization can be manifested through close administration with the residents. It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office of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actions of the government that should be carried out near the residents, and the application of uniform national standards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based on efficient office work. In order to allocate such an office, the standard of office allocation shall be the act prescribed by the law, not the purpose of the law.

In the case of classifying office work centered on the acts of the government, the system of the law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elderly should be preceded. In other words, it is essential to classify the detail work as individual laws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c law of the elderly welfare, to present the scope, object and method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e desirable future condition of the elderly welfare and to promote the details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act a new law rather than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since the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welfare of the elderly is a non-democratic legal system that defines the limit of the ordinance that can enact the ordinance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work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within the scope of the enforcement decree ultimately entails the duties of the state. For this purpose,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current Local Autonomy Law, which defines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he Local Autonomy Basic Law, and to establish detailed laws on local autonomy under the basic law

system.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legal system to enact the Basic Law of the Elderly Welfare and to enact the details of the elderly welfare by the individual law. The Basic Law of the Elderly provides the direction and purpose of the elderly welfare policy from a macro point of view, and the detailed act is a system that regulates by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for the specific enforcement of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avoided, and curr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 should be delegated to ordinances to expand the responsibilities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can be traced to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utonomy comes from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This self-determination must be self-responsibility. However, from the standpoin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e demand for high-quality administrative services, rather than the expansion of autonomy through self-determination,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increase becomes a bigger problem.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in which local communities, NGOs, NPOs, and corporations that can provide local public services with local governments are the subject of public service delivery.